

310.111  
등142  
2009. 01. 27

2005년 기준  
**서비스업동향조사**  
**조사지침서**

2009

B96505



서비스업동향과

## 서비스업동향조사 지침서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08년 조사	2009년 조사
<b>대상 업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li> <li>· 12개 업종(대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li> <li>· 13개 업종(대분류)</li> </ul>
<b>조사 (세부) 항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외사항</li> <li>· 사업체번호</li> <li>· 산업분류</li> <li>· 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외사항</li> <li>· 행정구역분류번호(신설)</li> <li>· 산업분류</li> <li>· 사업체일련번호(명칭변경)</li> <li>· 사업체고유번호(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표(1)(2) : 사업체 구분</li> <li>○ 조사표(3)-사회복지 서비스업</li> <li>· 시설현황</li> <li>○ 조사표(4)-도소매업</li> <li>· 월간 상품판매액 :   귀금속류, 주방용품, 담배, 연료</li> <li>· 월말 상품재고액 :   재별분류별 재고액, 수수료매장 재고액   포함여부, 직영매장판매액 비율</li> </ul>	조사표 항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어해설</li> <li>· 경과보험료, 경상경비지출액 등</li> </ul>	삭제 ※ 지방청 질의사항 등과 함께 통계지식포털시스템(UBIS) 내 지식창고 'Q&A'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명</li> <li>·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li> <li>· 조사기록부인 경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명칭을 기입하고 정식 명칭을 부기   예)프라자호텔(한화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명</li> <li>· 간판에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li> <li>· 간판에 있는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을 비교란에 기입</li> <li>·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기입   예) 샘머리 둔산점 → 샘머리자동차(주) 둔산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수</li> <li>· 상시종사자와 기타종사자를 합하여 기입(월말기준)</li> <li>· 용역직원은 종사자수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수</li> <li>·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월말기준)</li> <li>·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는 종사자수에서 제외</li> </ul>
<b>증감 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증감시 모든 사업체의 증감 사유 기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판매액 4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체는 증감사유 미기입 허용</li> </ul>
<b>기타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업종별 개요, 포괄산업 분류,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인터넷 조사(CASI) 사용요령, 조사지침관련 사례 등 수정</li> <li>○ 도소매업 부문 개요 및 사례 수록</li> </ul>

# 차례



## 1편

###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	3
2. 조사연혁 .....	3
3. 법적근거 .....	3
4. 조사 대상 및 단위 .....	4
5. 조사표 종류 및 조사항목 .....	6
6. 조사시기 .....	7
7. 조사방법 .....	7
8. 집계결과 공표 .....	7
9. 업무흐름도 .....	8

## 2편

### 서비스업 부문

9

#### I. 서비스업 조사지침

1.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11
2. 실제 조사시 유의사항 .....	12
3. 업종별 매출액 개념 및 조사요령 .....	17
4. 조사표 항목별 작성요령 .....	36
5. 서비스업 사업체 관리 요령 .....	48

II.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 개요 .....	72
--------------------------	----

### Ⅲ. 서비스업관련 부록

1. 조사지침 관련 사례 .....	78
2. 통계법 관련 조항 .....	91
3. 포괄산업 분류 .....	97
4. 업종별 절사점(종사자수) 및 산업분류 참고표 .....	104
5. 서비스업동향조사 조사표(양식) .....	109

3편

도소매업 부문

115

#### I. 도소매업 조사지침

1. 현장조사 유의사항 .....	117
2. 조사대상 .....	120
3. 조사표 작성방법 .....	125
4. 사업체 관리 요령 .....	133

#### II. 소매판매액통계 작성 개요 .....

138

#### Ⅲ. 도소매업관련 부록

1. 조사지침 관련 사례 .....	142
2. 대표업종별 포괄산업분류 .....	150
3. 상품분류 기준 .....	154
4. 사업체변동 전산처리방법 .....	156
5. 도소매업부문 조사표(양식) .....	165

# 1편

## 조사개요

- ① 조사목적
- ② 조사연혁
- ③ 법적근거
- ④ 조사 대상 및 단위
- ⑤ 조사표 종류 및 조사항목
- ⑥ 조사시기
- ⑦ 조사방법
- ⑧ 집계결과 공표
- ⑧ 업무흐름도

## 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소매판매액통계 작성을 위해 서비스업의 월간 경영실태 등 기초자료 파악

## 2. 조사연혁

## 가. 도소매동태조사와 서비스업동향조사 통합전(2008. 2월까지)

## ● 도소매동태조사

작성기간	기준년도	표본규모	작성기관	비 고
1965. 1. ~ 1970.10.	1965	93	한국은행	서울의 소매업만 조사
1970.11. ~ 1977. 6.	1970	827	조사통계국	서울의 도매업 추가
1977. 7. ~ 1982. 6.	1975	1,440	"	
1982. 7. ~ 1988. 2.	1980	3,400	"	전국지역으로 확대
1988. 3. ~ 1993. 2.	1985	4,000	통계청	(1990. 12월 통계청 신설)
1993. 3. ~ 1997. 9.	1990	4,497	"	
1997.10. ~ 2003. 6.	1995	5,547	"	
(1998. 1. ~ )	"	"	"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소매업태별 지수 추가
(2000. 5. ~ )	"	"	"	소비재별 지수 추가
2003. 7. ~ 2008. 2.	2000	5,205	"	

### ◎ 서비스업동향조사

실시기간	기준년도	표본규모	비 고
1999. 1. 1. ~ 2000. 1. 31.	1996년	약 4,900개	시험조사
2000. 2. 1. ~	"	약 4,200개	본조사
2000. 8. 18. ~	"	"	조사결과 공표
2004. 3. ~	2000년	약 5,000개	2000년기준 표본개편
2005. 3 ~ 2008. 2.	"	"	부동산공급업, 초·중·고등교육 기관, 예술학원 등 업종 추가

#### 나. 도소매동태조사가 서비스업동향조사로 통합후(2008. 3월후)

실시기간	기준년도	표본규모	비 고
2008. 3. ~	2005년	약 9,300개	2005년기준 표본개편
2009. 3. ~	2005년	약 9,300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적용

## 3. 법적근거

-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 10150호)

## 4. 조사 대상 및 단위

### 가. 대상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개정, 2007. 12. 28.)상의 21개 대분류 산업 중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3개 산업 대상
  -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제외)

-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업종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 대상에서 제외

## 나. 조사단위

- 사업체 단위 및 기업체 단위를 혼용하여 조사
  - 사업체 단위는 개개의 사업장 자체를 조사단위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체 구분상 단독사업체, 지사(점) 등이 이에 해당
  - 기업체 단위는 기관(협회)조사 및 본사조사 사업체를 의미하며 지회(부), 지사(점), 영업소 등을 포함하여 전국단위로 조사
-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및 운수업통계조사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선정한 약 9,300개 대상처 (사업체, 기업체, 기관 등)

### 〈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영하는 사업체
- 겸업업체로서 주된 사업내용이 조사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체
-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설비가 없는 노점, 행상 등

## 5. 조사표 종류 및 조사항목

### 가. 조사표는 업종별로 4종으로 구분

구 분	업 종
조사표(1)	일반 업종(서비스업대분류 H, I, J, K, L, M, N, P, Q, R, S, E 포함됨)
조사표(2)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종합휴양업(55113)
조사표(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87)
조사표(4)	도매 및 소매업(G)

### 나. 조사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기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명</li> <li>- 행정구역분류번호</li> <li>- 산업분류</li> <li>- 사업체일련번호</li> <li>- 사업체고유번호</li> <li>- 월간 영업일수</li> <li>- 월말 종사자수</li> <li>- 월간매출액</li> <li>-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및 사업체 특이사항)</li> </ul>	
업종별 특성항목	도매 및 소매업	상품군판매액, 월말상품재고액
	하수·폐기물 처리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량(하수처리, 폐기물처리업만 해당)
	운수업	수송인원수 취급화물량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총가입자수(전기통신업만 해당)
	부동산업 및 임대업	임대연면적(부동산임대업만 해당) 차량보유대수(운송장비임대업만 해당)
	학원	수강인원수(학원만 해당)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관람자수 및 입장객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식건수(예식장업만 해당)

## 6. 조사시기

- 조사대상기간 : 매월 1일 ~ 말일
- 조사 및 입력 기간 : 매익월 1일 ~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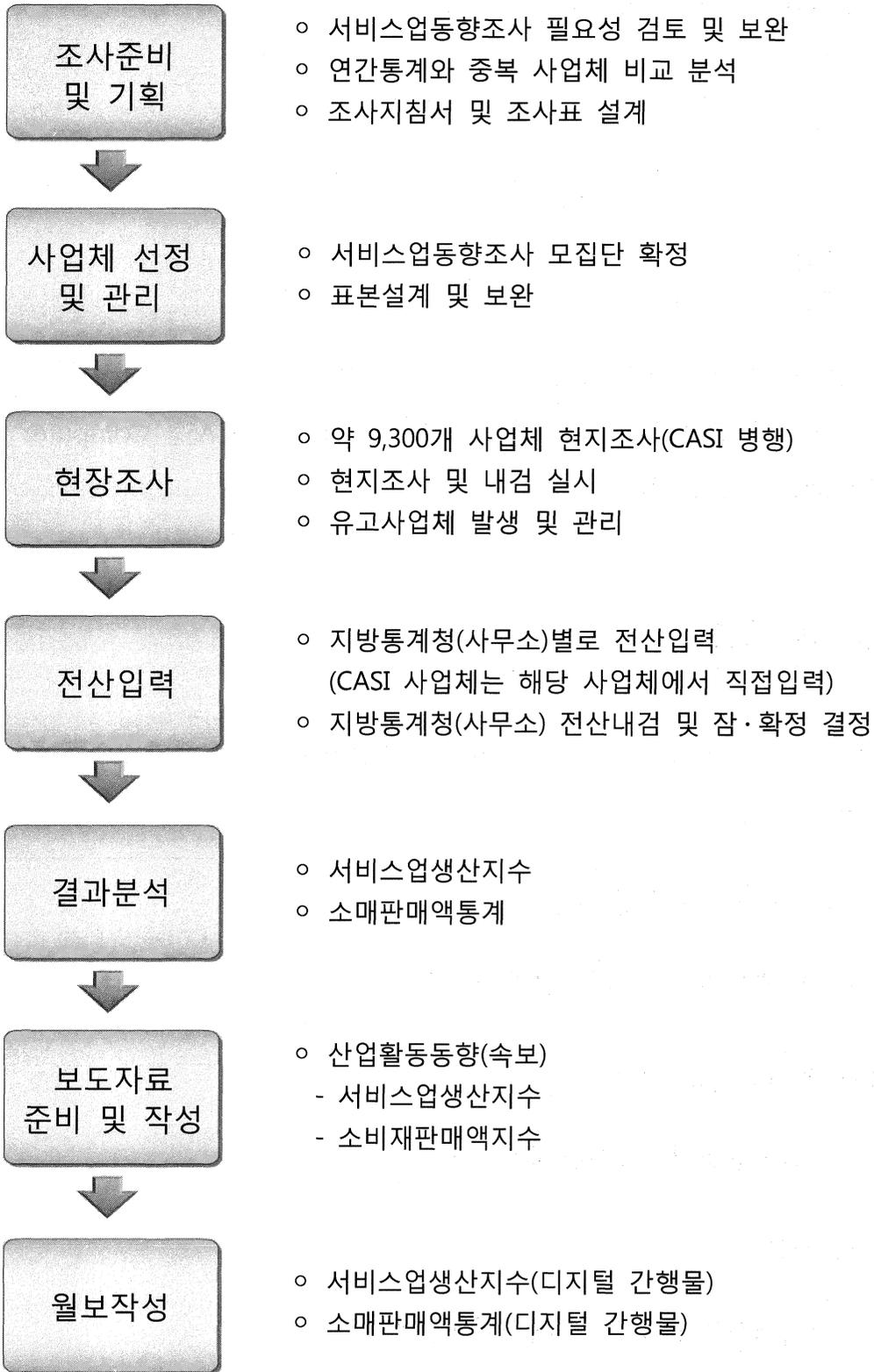
## 7. 조사방법

-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CASI: Computer Aided Self Interviewing)를 병행

## 8. 집계결과 공표

- 타기관 및 통계 자료를 기초로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소매판매액통계를 작성 및 공표
  - 보도자료 : 산업활동동향(매월말)
    -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비재판매액지수
  - KOSIS수록(www.kosis.kr)
    -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매판매액통계
  - 디지털간행물
    - 서비스업생산지수월보, 소매판매액통계

## 9. 업무흐름도



# 2편

## 서비스업 부문

### I. 서비스업 조사지침

- 1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2 실제 조사시 유의사항
- 3 업종별 매출액 개념 및 조사요령
- 4 조사표 항목별 작성요령
- 5 서비스업 사업체 관리 요령

### II.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 개요

### III. 서비스업관련 부록

- 1 조사지침 관련 사례
- 2 통계법 관련 조항
- 3 포괄산업 분류
- 4 업종별 절사점(종사자수) 및 산업분류 참고표
- 5 서비스업동향조사 조사표(양식)

## I

## 서비스업 조사지침

## 1.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조사표 종류가 4종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대상사업체에 적용할 조사표 종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작성
  - 조사표(1) : 일반 업종(서비스업대분류 H, I, J, K, L, M, N, P, Q, R, S, E 포함됨)
  - 조사표(2) :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종합휴양업(55113)
  - 조사표(3)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87)
  - 조사표(4) : 도매 및 소매업(G)
- 수량과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당란에 정자로 기입하되,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
-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수정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복선(=)을 그은 후 수정
  - 조사표의 일부항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관련되는 조사항목의 내용도 재검토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매출액 조사단위는 **백만원**을 기본단위로 함

- 주사업내용 이외의 업종이 일정규모(30%)이상이며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서비스업 동향과와 협의하여 구분 조사
  - 겸업인정여부는 전수층(전수조사), 절사표본업체인 경우만 해당되며, 이외에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결정
  - 예) 육탕업의 경우는 체력단련시설운영업 등
- 업종별 특성항목의 조사단위는 지정된 단위(M/T, m<sup>2</sup>, 건, 개 등)에 맞도록 기입하고 조사단위는 업종별 특성항목을 참고
- 조사표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응답거부 또는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기재하거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됨

## 2. 실제 조사시 유의사항

- 조사의 기본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조사에 임할 것
  - 조사목적 등을 파악하여 사업체에서 질의할 경우 정확하게 답변
  - 업종별로 매출액 개념이 다르므로 사업체 조사시 매출액 포괄 범위를 매월 파악하여 지침서의 내용과 비교
  - 겸업사업체의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조사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업 동향과와 협의 후 결정
  - 특성항목의 경우 조사단위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조사단위와 상이하여 환산하는 경우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

- 영업일수, 종사자수 등 기타항목에 대해서도 조사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용
-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결정

◎ 신규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상업무에는 조사기록부만을 이용할 수도 있음

- 매월 조사 시 조사표와 조사기록부가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규 사업체에는 반드시 조사표를 제시하여 조사에 임할 것
- 조사기록부에 매월의 조사사항을 반드시 기록·유지하여 조사의 누락, 오기 및 합계착오 등 조사상의 오류 방지 및 내용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
  - \* 조사기록부에도 조사단위를 명확하게 기입(매출액 : 백만원 단위로)
  - \* 또한, 업무분장 등으로 사업체 담당이 변동되면 과거 실적자료에 대한 조사기록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 매출액은 백만원 단위로 조사

- 매출액은 백만원 단위임에 유의하여 조사
- 매출액이 백만원 미만인 사업체는 사사오입하여 작성

◎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되는 사업체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국공립 도서관 및 박물관 등과 같이 경상경비지출액을 주로 조사하는 업종이라도 매월 경비지출액보다 입장료 등 영업수입(매출액)이 더 많아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수입을 매출액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

- 경상경비지출액은 매월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적 지출은 제외시킴

### ◎ 매출액 등에 대한 내용검토 철저

- 현장조사에서부터 전월 및 전년동월 수준 등을 비교하여 조사하고 입력 후 전산프로그램에서 출력하여 재검토

### ◎ 비교란도 하나의 조사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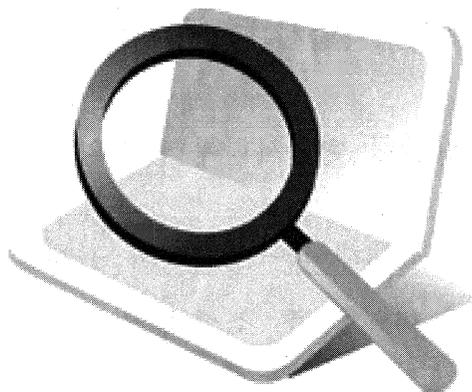
- 매월 조사시 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교란에 기입하도록 함
  - ☞ 서비스업동향과에서의 지방청(사무소) 및 사업체에 대한 문의전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서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
- 증감을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pm 20\%$  미만) 가능하면 증감사유,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여 작성

### ◎ 잠정자료는 반드시 사업체에 문의한 후 작성

- 매월 잠정으로 조사되는 사업체가 너무 많고, 또한 잠정과 확정자료 간에 차이 발생
  - ☞ 잠정으로 조사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 임의로 실적을 작성하지 말고, 필히 사업체의 경영실태를 문의한 후 작성
  - ☞ 또한, 기간 내에 자료 확보가 곤란한 사업체는 조사기간(20일)이 지났더라도 지수 확정전(23일경)까지는 자료수정이 가능하므로 확정자료가 확보되면 입력프로그램에 수정 입력

- 지방청(사무소)에서는 매월 잠정치로만 조사되는 사업체의 명단을 작성하여 특별 관리(분기, 집계지연 등)
- ◎ **산업분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매월 조사시 변경 또는 분류착오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산업분류를 잘못 분류시 사업체 실적 전체가 다른 산업에 포함되는 치명적인 오류 발생
  - 포괄범위내에서의 산업분류 변경은 서비스업동향과에 변경된 산업분류를 통보한 후 계속조사
  - 업종포괄 산업분류 범위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 전수층인 사업체는
      - ① 조사 착오 및 업종을 중간에 변경한 경우는 변경된 업종에 따라 조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후 결정
      - ②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체의 주산업분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후 결정
    - 표본층 사업체는 [사업체관리 방법]에 따라 사업체를 대체함
- ◎ **조사시작 전에 사업체 변동사항부터 파악**
  -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시작 전에 사업체명 변경 등의 사업체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조사에 임할 것
    -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변경 등은 내용만 보완
    - 산업분류 변경, 진출·입, 폐업, 합병·합산 등은 [사업체관리 방법]에 의거 처리

- 휴업사업체는 매월 확인하며, 표본층 사업체인 경우는 휴업상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서비스업동향과에 통보하여 조치
- 전자조사방식(CASI)으로 조사하는 사업체는 3개월 기준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조사담당자는 대상사업체의 사업주(또는 응답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사업체의 영업실적 및 향후 유고발생 등 동향을 파악하여야 함
  - 매월 조사기간 중에 대상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부득이 전화, 팩스 등으로 조사하는 경우 사전에 응답자의 양해를 구하도록 함



### 3. 업종별 매출액 개념 및 조사요령

#### 가. 업종별 매출액 개념

##### 1) 업종별 매출액 유형

##### 가) 업종별 유형

업종명	매출액 유형
운수업	• 영업수입액
운송업	• 운수수입액
창고업	• 보관료수입액
음식점업	• 영업수입액
영화산업	• 영업수입액
방송업	• 영업수입액
우편업	• 우편요금, 수수료 수입액
전기통신업	• 요금, 사용료, 수수료
일반은행	• 영업수익 등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영업수익(수수료수입액, 각종 이자 수입액)
보험업	• 영업수익 또는 보험료수입액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임대료, 수수료
부동산공급업	• 기성액 또는 월별 시공사 청구액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영업수입액
연구개발업	• 경상경비지출액
사업지원서비스업	• 용역수입액, 영업수입액
여행사업	• 여행알선수수료, 승차권판매수수료 등
유아교육기관	• 보육료, 수업료수입액 (병설유치원인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중등, 고등교육기관	• 경상경비지출액

업종명	매출액 유형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 수강료
도서관, 사적지, 유사 여가 관련서비스업	· 이용료, 입장료수입액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여 수입액이 시장가격 수준 이하로 무상에 가깝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경주장 운영업	· 장내 발매수입액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입장료 수입액
산업단체	· 경상경비지출액
예식장업	· 대여수입, 부대수입액
하수·폐기물 처리업	· 영업수입액(처리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종합휴양업	· 각 업종별 매출액을 참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 관할 시설의 경상경비지출액

### 나) 기관조사 업종

업종	조사대상기관	매출액 유형
철도운송업	한국철도공사	총수입(여객, 화물, 도시철도)
시내버스운송업	서울특별시	월간 운수수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전산망의 월간 매출액
일반은행	한국은행	월간 대출금 평균잔액, 영업수익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한국은행	월간 대출금 말잔액
투자기관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월간 대출금 말잔액, 간접상품잔액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금융감독원	월별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비례수당

업종	조사대상기관	매출액 유형
생명보험업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영업수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투자영업수익
손해보험업	금융감독원	손해보험 경과보험료 ※ 경과보험료=수입보험료-지급보험료+전기이월말경과 보험료-차기이월말경과보험료
의료보험업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월간 보험료 수입(징수액, 결산기준)
금융시장관리업	한국거래소	월간 영업수익
증권 및 선물중개업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월간 주식 거래 대금 및 간접상품설정 잔액
부동산중개업	한국토지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월간 부동산 거래실적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초·중·고등학교	시도 교육청	월간 경상경비지출액
대학교	기획재정부	월간 경상경비지출액
병원업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월간 청구진료비
의원업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월간 청구진료비
경주장 운영업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월간 장내 경마권, 경륜권, 경정권 판매액
골프장운영업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월간 골프장 내장객수
자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처리업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월간 폐기물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2) 업종별 매출액 조사방법

### 가) 운수업

#### 운수업의 업종 개요

- 운수업은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운송업 : 노선 또는 정기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운송관련 서비스업 :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 화물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 운송업의 매출액은 운수수입이며 창고업의 매출액은 보관료수입, 터미널시설 운영업은 영업수입(수수료 및 임대수입 등)으로 조사

- 운송업(철도491, 육상여객492, 도로화물493, 해상501, 정기항공511)의 매출액은 조사대상 월에 사업체에서 운수활동(여객운임, 화물운임)으로 벌어들인 운수수입액을 조사하며, 부대수입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포함하여 조사
  - ※ 운송업체의 지입차량(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개인소유의 차량)에 대한 운수수입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포함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회사소유의 차량에 대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지입차의 운수수입을 산출한후 포함 조사하도록 함
- 보관 및 창고업(521),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5291),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 화물 취급업(5294),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5299)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주된 영업수입(수수료, 보관료, 서비스료, 주선료 등)을 조사
  - 부대수입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조사

- ◎ 여객 및 화물 자동차터미널 운영업(52912, 52913)의 매출액은 터미널시설 운영업체가 당월에 판매한 승차권판매수수료 및 화물운송알선수수료 수입액을 포함한 전체의 영업수입을 조사
-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의 매출액은 월간 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의 통행료 수입을 조사
  - 무료시설로 바뀌는 경우는 대상사업체에서 제외

## 나)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 및 음식점의 업종 개요

- 숙박업 :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음식점업 :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됨

▣ 숙박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숙박료수입)이며, 음식점업은 음식물을 판매한 영업수입으로 조사

- ◎ 숙박업(호텔업55111, 여관업55112 등)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액을 조사하며, 영업수입액은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영업수입을 합산한 금액임

- ◎ 종합휴양업(휴양콘도운영업55113)은 숙박, 음식점업, 골프장, 스키장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며, 각 사업부문별로 해당 매출액을 구분하여 조사
  - 숙박업(551) : 호텔업(55111), 휴양콘도 운영업(55113), 기타
  - 음식점업(561) : 한식점업(56111), 기타
  -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 : 골프장(91121), 스키장(91122), 유원지 및 테마파크(91210)
    - ※ 골프장 운영업(91121)의 매출액은 회원 및 비회원 골프장사용료와 부대 시설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연회비 포함)
      - 연회비는 발생한 해당월의 매출액에 포함
  - 기타 : 소매점 및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서비스업관련 매출
- ◎ 일반 음식점업(한식 음식점업56111, 중식 음식점업56112, 일식 음식점업56113, 서양식 음식점업56114,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56119)의 매출액은 음식물을 판매한 금액(영업수입)을 조사
- ◎ 기타 음식점업(제과점업5619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6192, 치킨 전문점56193, 분식 및 김밥전문점56194, 그 외 기타 음식점업56199)의 매출액은 음식물을 판매한 금액(영업수입)을 조사
- ◎ 주점업(기타주점업56219)은 음식물 및 술을 판매한 금액(영업수입)을 조사
- ◎ 비알콜 음료점업(56220)은 음료 등을 판매한 금액(영업수입)을 조사

## 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자료처리 및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영상 제작 및 배급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을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방송업 :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
- 통신업 :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우편활동도 포함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템의 통합관련 기획 및 설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 정보서비스업 : 정보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우편업의 매출액은 판매수입, 우편물잡수입 등이며 전기통신업의 매출액은 요금, 사용료, 수수료 등의 영업수입임

- 출판업은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며, 서적출판업(5811), 정기간행물출판업(5812)으로 구분

- 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의 매출액은 일반 또는 광고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필름의 편집 및 복제, 더빙, 필름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5914)의 매출액은 관람료 수입을 조사
- 지상파 방송업(6021)의 매출액은 광고수입, 시청료수입, 프로그램 판매 수입, 기타수입을 합산한 영업수입을 조사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의 매출액은 영업수입(광고수입, 시청료 수입 등) 및 유선임대료 수입을 조사
- 우편업(61100)의 매출액은 우편요금 및 수수료 수입
  - 우편물요금, 우편수수료, 우편엽서관매, 소포우편물요금 등을 조사하며, 단 우체국의 금융·보험활동에 의한 수입은 제외시킴
- 전기통신업(612)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통신회선을 제공하고 징수한 요금 및 사용료와 통신서비스 수수료를 합산하여 조사
  - 유선통신업(6121)은 유선전화서비스, 유선전신 및 전보서비스, 유선인터넷 서비스, 유선통신회선설비 임대 등이 포함됨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6202)의 매출액은 용역 매출액과 제품매출액을 포함한 영업수입을 조사(상품매출액은 제외)

## 라) 금융 및 보험업

## 금융 및 보험업의 업종 개요

- 금융업 :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
- 보험 및 연금업 :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이 포함됨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활동

▣ 금융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익, 보험업은 영업수익 또는 수입보험료로 조사

- ◎ 일반은행(6412)은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영업보고서의 “1.원화예치금이자~25.역외외화본지점대이자, 30.지급보증료수입~35.유가증권대여료, 39. 외환거래이익”을 매출액으로 조사
  - 단, “39.외환거래이익”은 매월 사업체 특이사항란에 기입
  - 또한 위의 “26.원화신용카드수입이자~29.기타외화신용카드관련수수료”는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64913)의 영업수익으로 조사
- ◎ 금융리스업(64911)의 매출액은 운용리스를 포함한 영업수익을 조사
-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64913)은 수입수수료(가맹점·통신판매·해외수입·현금 서비스·연회비·연체·할부·보험수수료) 및 이자(카드론, 수요자금융이자, 단기대여금이자, 유가증권이자)의 합계금액을 영업수익으로 조사

- ◎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6413), 투자기관(6420), 생명보험업(65110), 손해보험업(65121), 증권 및 선물중개업(6612),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서비스업 동향과에서 영업수익 등을 직접 조사
- ◎ 연금 및 공제업(6530)은 연금지급액(연금업), 영업수익(공제업)을 조사
- ◎ 건강보험업(65131)은 피보험자에게서 징수한 보험료를 조사
- ◎ 손해사정업(66201)은 영업수익(수수료 등)을 조사

#### 마)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업종 개요

- 부동산업 :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 임대업 :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임대료, 수수료)으로 조사

-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의 매출액은 임대료수입을 조사
  - 전세금 및 보증금은 조사대상 월의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환산하여 조사
-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의 매출액은 기성액을 조사
  - 기성액 : 도급액(공사계약액)에 월별 공정률(기성률)을 곱한 실적 또는 월별 시공사 청구액

-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1),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2)의 매출액은 관리비 수납액을 조사하며,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입주자 또는 건물관리 위탁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을 조사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고지서전체금액(관리비납부액총액) 기준으로 하되 비정상적 층당금은 제외(예시 : 단지내 체육시설 운영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은 제외
- ◎ 부동산 감정평가업(68222)의 매출액은 감정평가수익, 지가평가수익과 임대 수익 등 부대수입을 조사
  - 기타 업종을 달리하여 겸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리 조사하며 월별로 분리 조사가 어려운 경우 포함하여 조사
-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69)에 속하는 업종은 렌탈(리스)에 의한 수입을 조사

#### 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연구개발업 :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의 기초탐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
  - 전문 서비스업 :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의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디자인 전문 서비스 활동과 수의 활동, 통역 및 번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연구개발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액(수수료 등) 및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연구개발업(70)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을 조사
  - 사업비에는 연구비, 연구개발비가 포함됨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1, 72, 73)에 속하는 업종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지원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산업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포함됨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호, 경비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액(용역수입, 수수료 등)으로 조사

- 여행사업(7521)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여행알선수수료, 철도 및 비행기 승차권 판매수수료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

## 아) 교육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됨

▣ 대부분의 교육서비스업의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또는 수업료 수입(수강료)으로 조사

- 유아교육기관(85110)의 매출액은 보육료 및 수업료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
  - 병설유치원은 강사보급 등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하며, 수업료 수입은 제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8521)는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조사
  - ☞ 교육청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과인)을 이용하여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 ※ 교육청의 경상경비 집행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사업, 과목)

- 예산사업 :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을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 교육 일반 사업은 제외
  - ⇒ 단,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부문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제외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관할학교의 지출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
  - ⇒ 자산취득, 상환지출, BTL운영비 등

- 대학교는 학교에서 지출한 운영비용(경상경비)을 조사
  - 사립대학(교)은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조사하며, 국립대학(교)은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 ※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제외
  - 학교 중·개축관련 지출, 투자자산, 고정자산매입지출, 고정부채상환 등은 제외
- 일반교습학원(8550),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의 매출액은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를 조사(실험실습비, 자격시험응시료는 제외)
  - 기술학원 등과 같이 등록시에 수개월분 수강비를 납부 받는 경우에는 당월 조사시 등록된 수강료수입 전체를 매출액으로 기재
- 방문 및 온라인 교육학원(85503, 85504)의 매출액은 출판사업 매출액을 제외하고 방송사업, 뉴미디어, 기타사업 매출액을 조사
- 예술학원(85620),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85699)은 운영수입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교육시설(85630)은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 학원운영수입 : 학원등록비, 수강비, 부대시설 운영수입 등

## 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보건업은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됨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거주, 비거주가 모두 포함됨

**▣ 보건업의 매출액은 진료비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보건업(86)의 매출액은 각급 진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와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월간진료비를 조사  
⇒ 각급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총진료비+산재보험의 월간 진료비 지급액
- 사회복지서비스업(87)의 매출액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월(분기)단위로 집행하는 예산금액을 경상경비지출액(예산 집행액)으로 조사

**차)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됨

**▣ 매출액은 영업수입이며,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이용료 수입, 입장료수입으로 조사**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에 속하는 업종은 월간 이용료 수입 또는 입장료를 매출액으로 조사하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보조금을 포함
- \* **입장료수입은 미미하고 대부분 보조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경주장 운영업(91113)의 매출액은 장내에서 발권된 마권, 경륜권, 경정권 등의 발매수입만 조사(부대수입 제외)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의 매출액은 당월 회비 및 입장료수입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조사
-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9)의 매출액은 당월 회비 및 영업수입을 매출액으로 조사
- 스포츠클럽 운영업(91191)의 매출액은 입장료 수입만 조사(부대수입 제외)

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됨

▣ 산업 단체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하며 기타 업종은 영업수입(수익)으로 조사

- 산업 단체(94110)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 예식장업(96991)의 매출액은 예식장대여 수입과 사업체에서 직영하는 영업 활동(음식점, 사진·비디오촬영, 주례알선, 꽃값 등을 합산한 금액)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

⇒ 예식장에서 직영하지 않는 음식점의 매출액은 제외함

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업종 개요**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고형 또는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이 포함됨

▣ 하수·폐기물 처리업은 영업수입액(처리비 등)을 매출액으로 조사

-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처리비 등 영업수입액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되어 있음

## 나. 매출액 집계 유형별 처리 요령

### 1) 분기별로 집계되는 매출액 처리요령

#### 가) 조사실시기간 내에 자료집계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 ◎ 대상사업체에 문의 후 경영실태 등을 반영한 월별 잠정치를 조사 (가결산 자료를 조사)
  - 잠정치에 대한 파악도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후 사업체별 조사지침을 적용하여 조사
  - ※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최근 2개월(전월과 전전월)을 잠정치로 공표하므로 전전월까지 2개월의 자료에 대해 확정치로 변경이 가능

#### 나) 분기별 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경우

- ◎ 월별로 균등 배분하여 조사
  - 예) 학원, 유치원 등에서 분기 또는 반기에 정액으로 납입되는 학원비, 보육료 등은 월별로 균등 배분하여 조사

## 2) 자료수집 지연 사업체의 매출액 처리요령

- 조사실시기간에 금월 자료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체에 문의 후 잠정치로 조사하고, 다음달에 전월자료에 대한 확정치를 조사
  - 잠정치(사업체 경영실태 반영분)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경우에는 전월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합 처리하고 다음달에 전월자료에 대한 확정치를 조사
- \* 반드시 사업체에 문의 후 잠정치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해서는 안 됨
- 비고란의 사업체특이사항에는 “금월자료 수집지연”으로 기입

## 3) 전월 또는 전전월 잠정치에서 확정치로 최종 조사된 경우 매출액 처리요령

- 전월 및 전전월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는 금월조사시 전월의 매출액을 입력프로그램에서 직접 수정 입력
- 3개월 이전의 자료가 변동된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에 통보하여 지침을 받아 처리

## 4) 표본사업체를 대체한 경우 전월매출액 조사 요령

- 표본대체후 새로운 사업체의 전월매출액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경우 조사자료를 기록부에 기재하여 매출액 수준 등에 참고

## 5) 겸업업체의 조사요령

- \* 겸업업체에서 업종을 새롭게 구분하여 조사하는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한 후 지침을 받아 처리

### 가) 서비스업이외의 타산업과 겸업인 경우

- 주된 사업내용이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 조사대상사업체가 되며, 타산업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 나) 서비스업부문의 겸업인 경우

- 전수층(전수조사)인 경우 분리하고자 하는 업종의 매출액이 일정규모(30%) 이상인 경우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매출액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규모가 작은 표본층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매출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이 큰 업종으로 포함 조사함
- 업종 분리는 사전에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조정

### 6) 진척률(진행률)에 의한 조사요령

- 수주한 제품, 용역 등을 완성하여 제공하기 위해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수주매출액에 조사월의 진척률을 곱하여 환산한 기성액을 매출액으로 조사
- 진척률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제품을 인도한 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월에 매출액으로 조사

### 7) 국고보조금 조사요령

-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의 조건에 따라 집행되며 사업체에 지급될 금액은 사업기간 이전에 확정되고, 확정된 통지를 받은 후에 수혜를 받음
- 보조금이 발생한 조사대상월에 영업수익액과 합산하여 조사하며, 특이사항에 보조금 금액을 기입

## 4. 조사표 항목별 작성요령

### 가. 사업체 기본항목

사업체명	
------	--

※행정구역분류번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자ID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 사업체명

- 간판에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간판에 있는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과 다른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을 비고란에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기입  
예) 샘머리 둔산점 → 샘머리자동차(주) 둔산지점
- 지사(점)인 경우 지사(점)까지 기입  
예) 푸르넷공부방 강서지점
- 사업체명의 공식명칭이 영어인 경우 그대로 기입  
예) 케이티(주) (X) → KT(주) (O)

#### ● 행정구역분류부호

- 시도, 시군구, 동읍면 코드 7자리를 기입

#### ● 산업분류

- 해당 사업체의 주산업분류를 산업세세분류(5자리)까지 기입

※ 겸업사업체의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분류가 주산업분류임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개정)를 적용

### ◎ 사업체일련번호

- 사업체 명부상에 등재된 사업체의 고유번호를 기입
- 앞의 4자리는 사업체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기입하며, 뒤의 2자리는 사업체가 유고로 대체된 경우 일련번호를 기입

예) 4001-00인 표본사업체가 유고 발생으로 처음으로 대체된 경우 사업체 일련번호는 4001-01임

#### 〈사업체번호 체계〉

사업체(표본) 유형	사업체번호	비고
◦ 전수조사, 전수층	0001 ~ 3999	전수업종 및 업종별 절사점이상 사업체
◦ 표본층	4000 ~ 7999	업종별 절사점 미만 사업체
◦ 절사표본	8000 ~ 8999	업종내에서 일부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사업체
◦ 분청조사	9000 ~ 9999	기관 및 일괄조사 사업체

### ◎ 사업체고유번호

- 모집단팀에서 부여한 고유 사업체번호이며, 지방에서 별도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 담당자 ID : 조사담당자의 ID를 정확하게 기입

〈유고 사항 및 유고 코드〉

조사 여부	변 동 내 용	부호	변 동 내 역 정 의
계 속 조 사	전 입	01	- 관할 지방청(사무소)을 달리하여 이동된 경우 이전한 장소의 관할 지방청에서는 전입, 이전하기 전 장소의 관할 지방청에서는 전출
	전 출	02	
	신 규	03	- 사업체명부에서 제외되어 있는 전수조사 및 전수층 사업체
	명칭변경	04	- 사업체의 명칭, 사업체구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체 대 체	05	- 폐업, 산업분류변경, 합병·합산 등으로 사업체를 대체한 경우
	포괄범위 내변경	06	- 산업분류변경이 포괄산업분류범위내인 경우
	합 병 합 산	07	- 조사대상사업체가 타 조사대상사업체 또는 조사하지 않는 사업체를 흡수하여 경영조직이 하나로 결합된 경우 → 피합병 사업체는 폐업처리
	산업분류 변 경	08	- 산업분류변경이 서비스업종의 대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조 사 중 지	폐 업	13	-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또는 3개월이상 장기휴업된 경우
	기타 (대상외, 소재불명)	14	- 서비스업이외산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또는 소재불명
	응답불응	15	- 응답불응에 의한 경우

## 나. 조사표별 조사항목

## 조사표(1) 일반조사표

## ① 월간 영업일수

2 5 일

- 조사 대상 월에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기입(조사 대상 월에 25일을 영업한 경우 위와 같이 기입)
-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영업을 하였더라도 영업일수에 포함
  -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진 실제 영업일수를 기입
    - 청소업의 경우 사무실 근무직원이 아닌 청소활동이 이루어진 일수를 기준
  - 직원근무일수와 고객사용일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일수는 직원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단, 조사당월 중 휴무 없이 가동 중인 창고업, 아파트관리사무소, 유선방송업 등 서비스활동이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은 조사월의 전체일수를 영업일수로 기입
-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경주장 운영업, 유아교육기관, 상설직원훈련기관, 전문강습소·일반강습소도 직원근무일수를 기입
  -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기관도 편의상 교육청 직원의 근무일수를 기입

② 종사자수

종사자수 

		1	0
--	--	---	---

 명

● 매월 말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

-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사자를 합하여 기입하되,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는 종사자수에서 **제외**

- 인력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본부 종사자와 다른 사업체로 보낸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기입

- 본사(점)의 경우는 지사(점)에 근무하는 종사자수까지 포함해서 기입

● 다음의 경우에는 종사자수에서 제외함.

- 월평균 정상근무일수의 1/3미만 업무에 종사한 자
- 공익근무요원, 각종 단체의 회원
- 무급 비상근임원

-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나,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 소속 근로자.

Handwritten notes:   
X  
320 ← 0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

① 상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li> </ul>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li> </ul>
③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li> <li>※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li> </ul>
④ 무급가족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무보수로 사업체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한 자</li> <li>※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분류</li> </ul>
⑤ 기타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 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기본급 등 일정 급여는 없음, 일정급여를 지급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 임시 및 일용으로 기입)</li> <li>(예시)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유흥종사자 등</li> </ul>

③ 월간 영업실적

※ 산업분류	(1) 주요사업내용 (업종명)	(2) 월간매출액(백만원)						(3) 업종별 특성항목								
		조	천	백	십	억	천	백	※항목명	※단위	십	만	천	백	십	일
5 5 1 1 1	호텔업					2	1	1								
	합 계								*****	***	*	*	*	*	*	*

## (1) 주요 사업내용

- ◎ 사업체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기입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매출액(영업수입)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입
  - ☞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가지 이상일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하여 조사
- ◎ 매월 조사시 사업체의 산업분류와 주요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2) 월간 매출액

- ◎ 월간매출액은 업종 및 사업체 특성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을 조사
  - ☞ (표)업종에 따른 매출액 개념 및 (2)업종별 매출액 조사방법(p.20) 참조
  - 매출액(영업수입액)은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 금액임
    -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합산하여 조사
  - 경상경비지출액은 매월 지출한 경비 중에서 자본적지출(건물 증·개축비,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을 제외한 경상적인 지출액임
    -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경상적인 지출에서 제외
- ◎ 월간 매출액 규모가 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사오입하여 기입
  - (단, 사사오입후 매출액이 0인 경우에는 사업체 특이사항에 금액 기입)

## (3) 업종별 특성항목

## ◎ 업종별 특성항목 단위 및 수치를 기입

- 운수업은 수송인원수 또는 취급화물량을 기입
  - 운송업인 경우 조사 대상 월의 총수송인원수를, 화물취급업인 경우 취급 화물량을 기입(※ M/T(metric ton) = 1,000kg)
    - ※ 택시, 시외·시내버스 등 특성항목의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의 경우 조사대상월의 총관람자수 기입
  - 단, 지상파방송업 등 관람자수가 특정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 특성항목을 조사하지 않음
-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연면적(m<sup>2</sup>)을 기입
- 운송장비임대업은 차량보유대수 기입
- 교육서비스업은 학원에 한하여 조사 대상월 말일을 기준으로 총수강인원수를 기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관람자수 및 입장객수 기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조사대상월의 총입장객수 기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조사대상월 말일 기준의 이용객수를 기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예식장업에 한하여 대상월의 예식건수를 기입
- 하수·폐기물 처리업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량(M/T)을 기입

**【참고】 업종별 매출액 개념 및 특성항목**

업종	매출액	특성항목	단위
· 하수· 폐기물 처리업	영업수입액(수수료)	하수 및 폐기물처리량(하수 처리, 폐기물처리업만 해당)	M/T
· 운수업	영업수입액(운송수수료)	수송인원수 취급화물량	명 M/T
· 숙박 및 음식점업	영업수입액, 매출액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업수입액	총가입자수(전기통신업만 해당)	명
· 금융 및 보험업	영업수입, 여신액, 연금지급액 등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업수입액(임대료, 수수료), 기성액(부동산공급업)	임대연면적(부동산임대업만 해당) 차량보유대수(운송장비임대업만 해당)	m <sup>2</sup> 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경상경비 지출액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 교육서비스업	영업수입액, 운영비용 등		
.. 중등, 고등교육기관	경상경비지출액		
.. 학원	등록비, 수강비, 부대시설운영 수입 등	수강인원수(학원만 해당)	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영업수입액(입장료)	관람자수 및 입장객수	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예식건수(예식장업만 해당)	건

**4]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 매출액이 전월, 전년동월에 비해 ±20%이상 변동이 있거나, 사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 및 내용을 자세히 기입  
단, 영세사업체(월 매출액 4백만원 이하)의 경우 사사오입 등으로 ±20%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전월대비 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 서	
			성 명	
			전 화	
			FAX	
			E-mail	

**〈 증감사유 예시 〉**

영업일수 증감, 계절적 수요증감, 기상악화로 감소, 명절영향으로 증가, 파업, 휴업, 설립, 할부판매, 신기술 도입, 시설확장·축소에 따른 증감, 판매가격의 변동에 따른 증감, 시설보수에 따른 증감 등

- 응답자가 소속한 응답부서와 전화번호를 기입
  - 응답자는 조사실시기간에 실제로 자료를 제공하는 자를 기입
- 응답자가 조사내용에 대한 질의 및 조사표의 전달이 용이하도록 조사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입

**조사표(2) : 종합휴양업**

■ 월간영업일수, 종사자수, 비고 등의 작성요령은 조사표(1)과 동일함

**3] 월간 영업실적**

(1) 산업분류		(2) 월간 매출액(백만원)						(3) 업종별 특성항목							
		조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항목명	*단위	십 만	천	백	십	일
① 숙박업 (551)	◦호텔(55111)					5	0	객실수	실					8	2
	◦휴양콘도운영업(55113)					8	9	객실수	실					9	0
	◦기타						0	객실수	실						
	소 계(551)					9	4	*****	***	*	*	*	*	*	*
② 음식점업(561)						2	5	객석수	석					8	0
③ 스포츠 및 오락 관련업 (91)	◦골프장(91121)				1	2	0	입장객수	명						
	◦스키장(91122)						0	입장객수	명						
	◦유원지 및 테마파크 (91210)					3	2	입장객수	명						
	소 계(91)				1	5	2	*****	***	*	*	*	*	*	*
④ 기 타						2	4								
⑤ 합 계(①+②+③+④)					2	9	5	*****	***	*	*	*	*	*	*

☞ 종합휴양업은 각 사업(업종)부문별로 매출액이 집계되므로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매출항목에 구분 기입

● 종합휴양업은 숙박, 음식점, 교육문화시설, 골프장, 스키장, 유원지 및 테마파크, 기타운동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해당업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숙박업(551) : 호텔업(55111), 휴양콘도운영업(55113), 기타

- 음식점업(561)

-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91) : 골프장(91121), 스키장(91122), 유원지 및 테마파크(91210)

- 기타

**조사표(3) : 사회복지서비스업**

■ 월간영업일수, 종사자수, 비고 등의 작성요령은 조사표(1)과 동일함

**3 월간 매출액(경상경비지출액)**

(1) 산업분류		(2) 월간 매출액 (백만원)						
		조	천	백	십	억	천만	백만
① 거주 복지시설 (871)	◦노인거주 복지시설(8711)							
	◦심신장애인거주 복지시설(8712)							
	◦기타 거주 복지시설(8713)							
	소 계(871)							
② 비거주 복지시설 (872)	◦보육시설(8721)							
	◦기타 비거주 복지시설(8729)							
	소 계(872)							
③ 합 계 (①+②)								

● 월간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또는 예산 집행액임

- 산업분류별 각 시설에서 해당 시, 군, 구로 월별 결산(보고)하는 경상경비 집행액을 매출액으로 기입하며, 월별 결산(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시설로 매월 지급하는 예산집행액(운영비)를 기입

**다. 조사기록부**

● 매월 경상조사시 작성하며, 사업체의 대체시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또한 관할지역에서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메모 등을 통해 보고(서비스업동향과, 전출지역)하여 월간조사가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조치(기록부는 별도로 송부)

● 기록부 항목은 보통 조사표항목과 일치하고, 사업체구분 또는 종사자수 등은 사업체 관리용으로 작성

- ◎ **사업체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지사(점) ③ 본사(점) → 지사(점)수 ( )개
- 단독사업체(1기업 1사업체)는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한 장소에 단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 지사(점)은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 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
  - 본사(점)(1기업 다사업체)은 동일한 경영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로서, 지사(점)수를 작성
    - 본사에 해당하는 사업체(기업체)는 산하의 모든 직영 지사(점)의 실적을 포함하여 조사
    - 또한, 산하 사업체의 사업내용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변동사항이 발견되면 서비스업동향과의 협의한 후 처리

## 5. 서비스업 사업체 관리 요령

### 가. 개요

#### 1) 관리목적

- ◎ 폐업 및 이전 등 유고발생이 빈번한 서비스업체의 변동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규편입 및 대체 등의 관리를 통해 조사자료와 작성지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 2) 표본설계

## 가) 기초자료(모집단)

- ◎ 2005년기준 서비스업총조사 및 운수업통계조사 결과자료중 조사대상인 11개 대분류에 해당되는 1,805,583개 사업체

## 〈 대분류별 모집단수 현황 〉

대분류	사업체수	구성비
서비스업	1,805,583	100.00
도매 및 소매업	634,003	35.11
숙박·음식점업	529,992	29.35
운수업	15,396	0.85
통신업	8,697	0.48
금융 및 보험업	32,505	1.80
부동산 및 임대업	90,639	5.02
사업서비스업	73,122	4.05
교육서비스업	120,555	6.6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6,462	2.5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97,253	5.3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56,959	8.69

나) 표본규모 산정을 위한 특성치 : 종사자수

다) 표본산출 방법

- ◎ 전수조사

- 업종(산업세세분류)별 전체의 업체수 10개 이하인 업종

- 업종(산업세세분류)별 전체의 업체수가 10-30개 이하인 업종 중 업체의 평균 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업종
- 공공기관, 관련협회, 공단(공사) 또는 감독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는 업종 (표본추출에서 제외시킴)

#### ● 표본조사

- 전수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표본조사부분임
- 표본규모 결정
  - 통합분류별로 부차모집단을 설정한 후 종사자를 특성변수로 한 응용절사법 (Modified Cut-off Sampling)을 적용하여 표본규모 계산

### 나. 사업체관리 방법

#### 1) 유고사업체의 대체 승인 절차

- \* 절사표본 및 표본층 사업체에 조사중지 사유가 되는 유고(장기휴업, 합병·합산, 산업분류변경, 폐업, 대상외, 응답불응)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순서)를 거쳐 대체하여 조사

#### 가) 표본층 및 절사표본 사업체 여부확인

#### 나) 유고표본사업체의 대체시기

- 매월 14일 이전에 유고 발생하는 경우는 당월 대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체 승인 후 20일 이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는 보합 처리하고 익월에 조사

- 매월 15일 이후에 유고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할 적정 사업체를 물색한 후 익월에 대체 승인 후 대체

\*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

#### 다) 유고표본사업체의 산업분류 및 규모검토

- 산업분류 확인

- 유고사업체와 동일한 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체의 유무확인

- 종사자수 및 매출액 확인

- 대체명부에서 유고사업체와 매출액규모 및 종사자수가 유사한 사업체의 유무확인

- 사업체의 정상적인 영업 및 경영시의 규모를 파악

- 매출액과 종사자수는 유고사업체의 최근 1년 간 평균을 이용

\* 유고시나 표본설계시의 종사자수와 판매액을 이용하지 말 것

#### 라) 적정한 대체사업체 선정

- 산업분류가 동일하고 ①매출액, ②종사자수가 유사한 사업체를 선정

- 적정한 사업체가 없는 경우 대체요령

- 명부에 적정한 사업체가 없을 경우 관내 현장에서 직접 선정

- 명부와 관내 현장에 적정한 사업체가 없을 경우 출장소인 경우 지방청 또는 사무소로 통보하여 관할지역에서 사업체를 선정

- 지방청(사무소) 관할지역에서 사업체가 없을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에 보고

**마) 대체 사업체의 승인 요청**

- 서비스업동향조사시스템[2-5 사업체대체]을 이용하여 대체 사업체의 승인을 요청하며, 표본관리과 보고는 생략

**바) 승인완료 후 즉시 조사 및 변동보고**

- 서비스업동향과의 승인(확정) 완료 후 실시 조사 가능
- 대체된 사업체의 경우 전월 실적을 소급조사하여 서비스업동향조사시스템에 입력
- 매월 사업체 변동 승인결과는 서비스업동향과에서 표본관리과에 일괄 보고

**2) 유고사항별 사업체 관리방법****가) 전입(01) · 전출(02)****(1) 관할 지방청 또는 사무소가 동일한 경우**

## ◎ 전수조사, 전수층 및 표본층 : 계속조사

- 이전 지역에서의 조사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가능한 경우 계속조사. 단, 이전하면서 규모(매출액)가 달라지는 경우는 대체하여야 함

**(2) 사무소 관할구역이 상이한 경우**

## ◎ 전수조사 및 전수층 : 계속조사

- 전출된 사업체가 소재하는 지방청(사무소)은 전출여부를 확인한 즉시 전입된 지방청과 서비스업동향과에 반드시 문서로 통보(사업체의 일반현황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

- 조사가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입·전출된 사업체의 조사담당자는 전출 여부를 확인한 즉시 해당 지방청 및 사무소간 업무협의를 통해 조사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전출 사업체의 기존 조사담당자는 업무 인계 이후에 전출 사업체의 조사가 단절 없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 표본층: 사업체 대체

- 전출된 사업체의 산업분류 및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체 대체

나) 신규(03)

◎ 전수조사, 전수층

- 지방청 및 사무소에서 현재 사업체 명부에 없는 신규 조사대상 사업체를 발견한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에 사업체 일반현황을 통보한 후 사업체번호를 부여받아 조사를 실시

※ 표본층의 경우는 해당 없음

다) 명칭변경(04)

- ◎ 사업체 명칭이 변경된 경우 수정한 후 계속조사 실시  
(현재 2005년기준 전산시스템에서 지방총괄자만 사업체명칭 변경이 가능함)

라) 사업체 대체(05)

- ◎ 전수조사, 전수층 :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결정

- ◎ 표본층 : 사업체의 폐업, 장기휴업, 산업분류 변경, 합병·합산, 진출입 등의  
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를 원칙으로 함

- 타 통계조사 명부를 활용하여 대체할 사업체를 모색

#### 마) 포괄범위내 변경(06)

- ◎ 포괄산업분류내의 변경은 서비스업동향과로 변경된 산업분류를 통보한후 계속  
조사하며, 입력시 변경된 산업분류로 처리

#### 바) 합병·합산, 분할(07)

##### 〈 합병·합산 〉

- ◎ 전수층 + 전수층

- 합병한 사업체만 조사하고, 합병된 사업체는 조사중지

- ◎ 전수층 + 미조사사업체

- 합병한 사업체는 전수층사업체로 조사

- ◎ 전수층 + 표본층

- 전수층 사업체에서 흡수

· 표본층사업체는 대체하고 전수층사업체는 계속 조사

- 표본층 사업체에서 흡수

· 기존의 표본층 사업체와 동일한 규모의 사업체로 대체하여 표본층사업체로  
조사하고, 흡수한 사업체는 전수층 사업체로 계속 조사

◎ 표본층 + 표본층

- 표본층 사업체의 조사를 모두 중지하고 사업체는 각각 대체
- 흡수한 사업체가 절사점 이상인 경우 전수층 사업체로 추가하고 서비스업동향과로부터 새로운 사업체번호를 부여받아 조사

◎ 표본층 + 미조사사업체

- 합병 후 사업체가 절사점 이상이면 전수층사업체로 조사하고 표본층사업체는 대체

〈분 할〉

◎ 전수층 => 전수층+전수층

- 두 전수층 사업체 모두 조사

◎ 전수층 => 전수층+표본층

- 전수층만 조사

◎ 전수층 => 표본층+표본층

- 표본층으로 바뀐 사업체는 조사 중지
- 신규 전수층 사업체 발굴이 가능할 경우 신규 사업체로 추가하여 조사

사) 산업분류 변경(08)

◎ 전수조사, 전수층

- 변경된 산업분류내에서 절사점이상이면 계속조사를 실시하고, 절사점 미만이면 조사중지

\* 변경된 산업분류가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14)의 대상외로 처리

◎ 표본층

- 변경된 산업분류내에서 절사점이상이면 계속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층에 해당되는 다른 사업체를 대체하여 조사적용해야 함

아) 폐업(13)

◎ 기존 사업체는 폐업한 날이 속한 익월부터 조사중지하며, 익월에 대체 요령에 따라 새로운 사업체로 대체

\* 세금감면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위장으로 폐업 신고한 업체가 다른 영업장소나 상호로 동종의 영업을 계속할 경우는 폐업으로 보지 않음

자) 기타(대상외, 소재불명)(14)

◎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처가 타산업(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

◎ 기존 사업체는 타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조사중지하며, 익월에 대체요령에 따라 새로운 사업체로 대체

차) 응답불응(15)

◎ 조사대상사업체의 응답불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응답불응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청장 및 사무(출장)소장에게 보고 후, 문서로 표본관리과에 통보

#### ※ 휴업사업체의 처리방법

- 유고코드는 없으나 사업체 특이사항란에 ‘○년○월부터 휴업’이라고 기재하며, 재영업시에는 ‘○년○월부터 영업재개’ 라고 필히 기재하여야 함
- 조업 재개 전까지 매출액은 “0”, 영업일수는 “1”로 처리
  - 사업체의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 휴업은 폐업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 다. 기타 사항

#### 1) 잠정치 및 확정치 입력방법

- 금월 자료가 잠정치인 경우 : 금월 매출액 자료를 입력한 후, [잠정]란에 표시한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저장됨
  - 잠정치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는 추후 자료수정한 후 확정치 표시가 가능하며,
  - 확정치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는 입력기간이 완료되면 지방청 및 사무소에서 자료를 수정할수 없음 (단, 금월 입력기간동안에는 자료 수정 가능)

서비스업동향조사표(I) 숙박 및 음식점업

조사표(I) 숙박 및 음식점업 2009년 02월분

사업체명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담당자ID	유고	상세정보
ABC호텔	9999-00	55111	총괄자	03	

1. 월간 영업일수  (일)      2. 종사자수  (명)

3. 월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전월 :  잠정  확정      당월 :  잠정  확정

업종	전월매출액	특성항목	업종	주요사업내용	당월매출액	전월비동월비	특성항목
55111	100	150	55111	호텔업	150	50.0 0.0	실

추가  
삭제

4. 비교(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금월 스위트룸 이벤트로 매출액 증가		

전월매출액     전월비  %    전년동월매출액     동월비  %

분석동계     저장     취소

● 전월 자료가 잠정치인 경우 : 전월 매출액 자료를 수정한 후, [확정]란에 표시한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저장됨

- 전월 잠정치로 표시된 매출액 100이 확정치 120으로 수정 입력된 경우

서비스업동향조사표(I) 숙박 및 음식점업

조사표(I) 숙박 및 음식점업 2009  년 02  월분

사업체명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담당자ID	유고	상세정보
ABC호텔	9999-00	55111	총괄자	03	

1. 월간 영업일수  (일)                      2. 종사자수  (명)

3. 월간매출액(단위:백만원)

전월 :  잠정  확정                      당월 :  잠정  확정

업종	전월매출액	특성항목	업종	주요사업내용	당월매출액	전월비	동월비	특성항목
55111	120	150	55111	호텔업	150	50.0	0.0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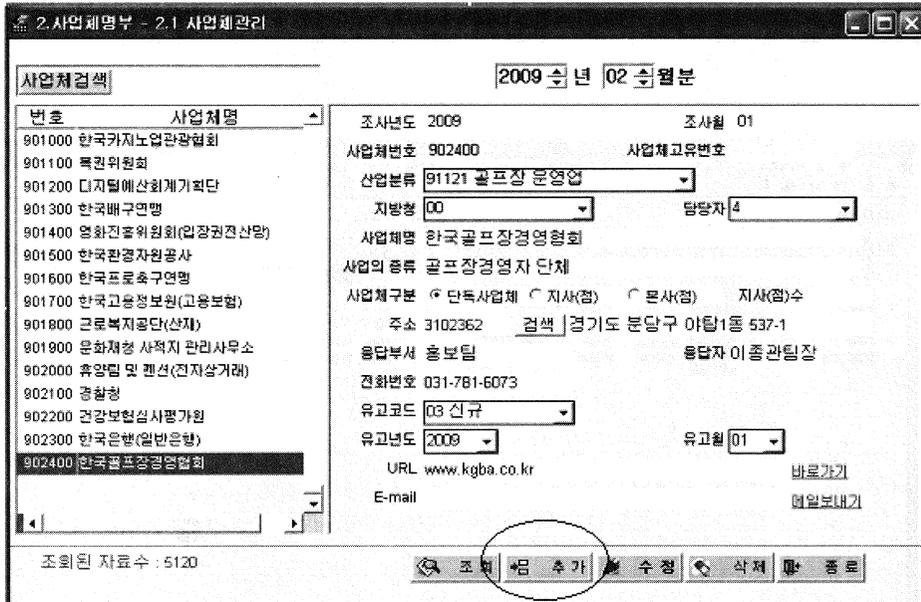
4.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증감사유	사업체특이사항
금일 스위트룸 이벤트로 매출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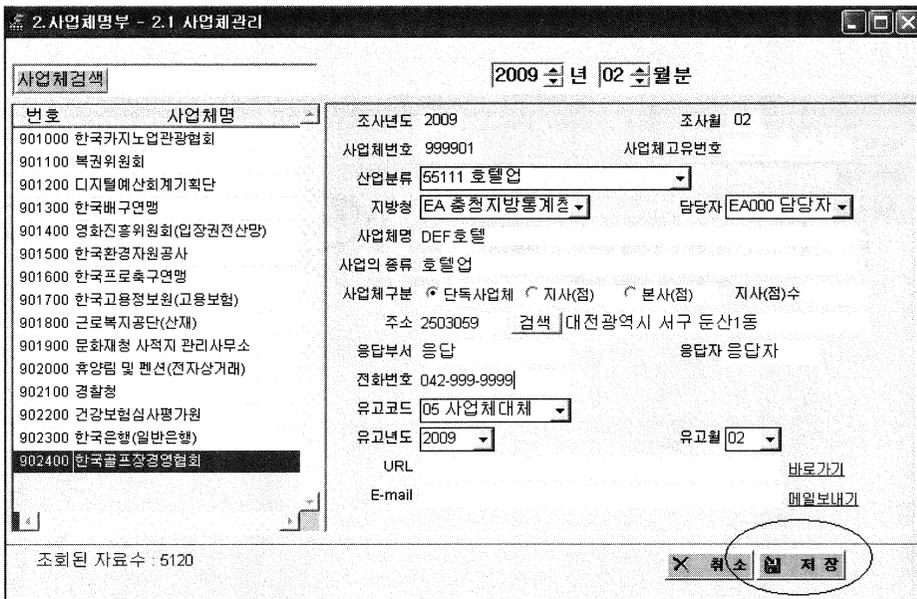
전월매출액     전월비  %    전년동월매출액     동월비  %



③ [추가] 버튼을 누름



④ 사업체 정보 입력 후 저장



⇒ 사업체번호는 기존 사업체 번호(4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대체번호는 일련번호 순으로 입력(예 : 4002 - 00 → 4002 - 01)

⇒ 대체시 반드시 위의 방법대로 처리할 것

※기존의 사업체 정보위에 새로운 사업체 정보를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

- ⑤ [2.5 대체사업체 확정] 화면에서 변경전·후의 사업체 종사자수, 연평균매출액, 월평균 매출액 및 '기타'에 사업체 대체 관련 사항 기입

2005 서비스업동향조사시스템 - 검색조사 - [2. 사업체명부 - 2.5 대체사업체 확정]

1 기초자료 2 사업체명부 3 자료입력 4 수문정정 5 디폴데이터 6 지수작성 7 작업관리 8(합) 도움말(안)

사업체검색 [2008년 01월분]

SEO	연월	작성/비작성	지정일	사업체 번호	구분	사업체명	사업 번호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전월말)	연평균 (전월말)	월평균 (전월말)	유고
1	2008	확정	01/14	999000	연결전	ADC호텔(주)	05111	호텔업	50	350	4200	15
2	2008	확정	01/14	999001	연결후	두바이호텔(주)	05111	호텔업	42	320	3040	05
2	2008	확정	01/14	111000	연결전	OO조경업체	74392	조경업체	13	2400	200	05
3	2008	확정	01/14	111001	연결후	AA조경	74392	조경업체	15	2400	200	05
3	2008	확정	01/14	680000	연결전	기니디올인디디자인	74601	실내장식디자인	13	24	900	13
3	2008	확정	01/14	680001	연결후	인테리어 디자인(주)	74601	인테리어 디자인업	15	30	360	05

조회된 자료수 : 03

2008년 01월 14일

2005 서비스업동향조사시스템 - 검색조사 - [2. 사업체명부 - 2.5 대체사업체 확정]

1 기초자료 2 사업체명부 3 자료입력 4 수문정정 5 디폴데이터 6 지수작성 7 작업관리 8(합) 도움말(안)

사업체검색 [2008년 01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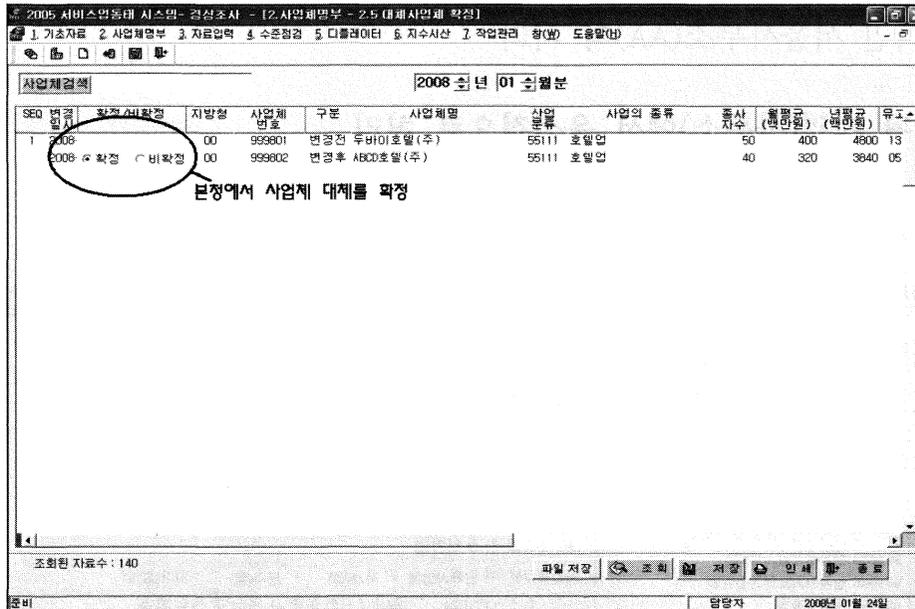
종사자 수 (전월말)	연평균 (전월말)	월평균 (전월말)	유고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ID	유고	비고	기타
3	18	13	13	마포구 서교동 955-18	02-822-0701	A0812	2007	12	회전 대기
3	8	05	05	강남구 논현2동 69-17	3442-2541	A0812	2007	12	
2	3	26	15	천안시 구정동 288-82	941-529-8141	11018	2007	12	조사에 협조하지가 영향력해로 조사불응
			05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동		11000	2007	12	

조회된 자료수 :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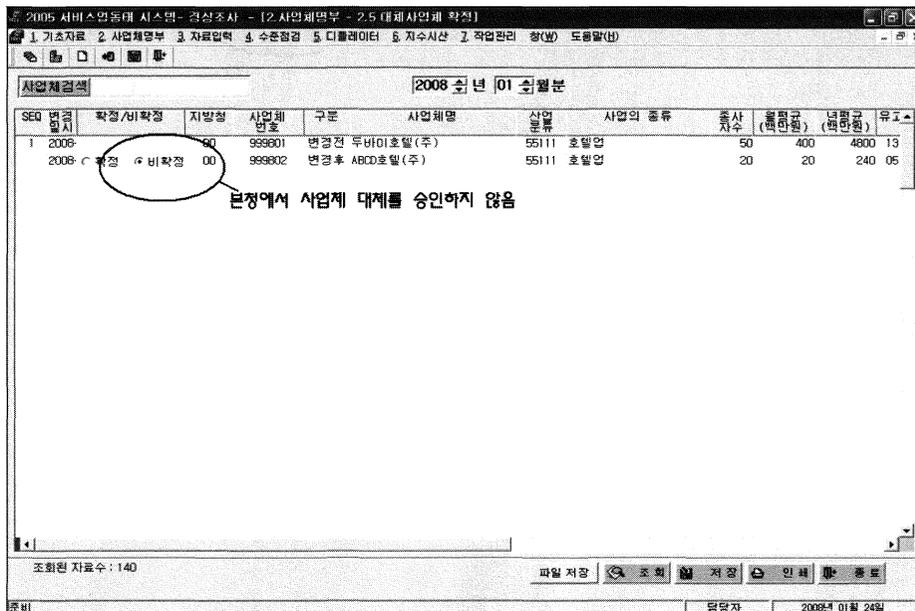
2008년 01월 21일

⑥ 본청의 지시에 따라 대체 사업체로 조사(확정시) 또는 다른 사업체로 재 대체 (비확정시)

- 본청에서 사업체 대체를 승인한 경우 (확정버튼에 클릭) → 대체한 사업체로 조사



- 본청에서 사업체 대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비확정버튼에 클릭) → 사업체 관리 방법에 따라 사업체를 다시 대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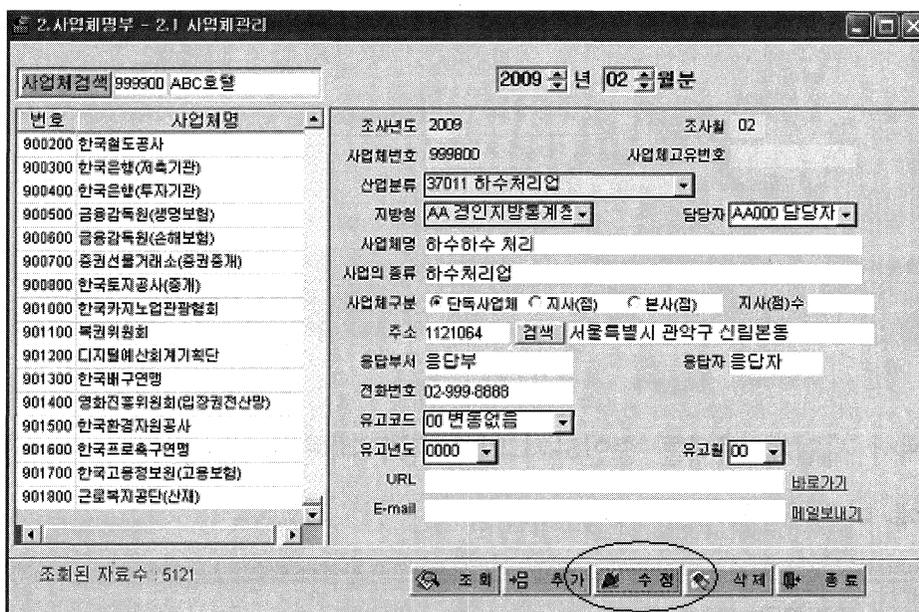
### 3) 사업체 전출입시 처리 방법

● 사업체번호 999800 ABC호텔(주)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소재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경인(서울) AA ⇒ 동남(부산) 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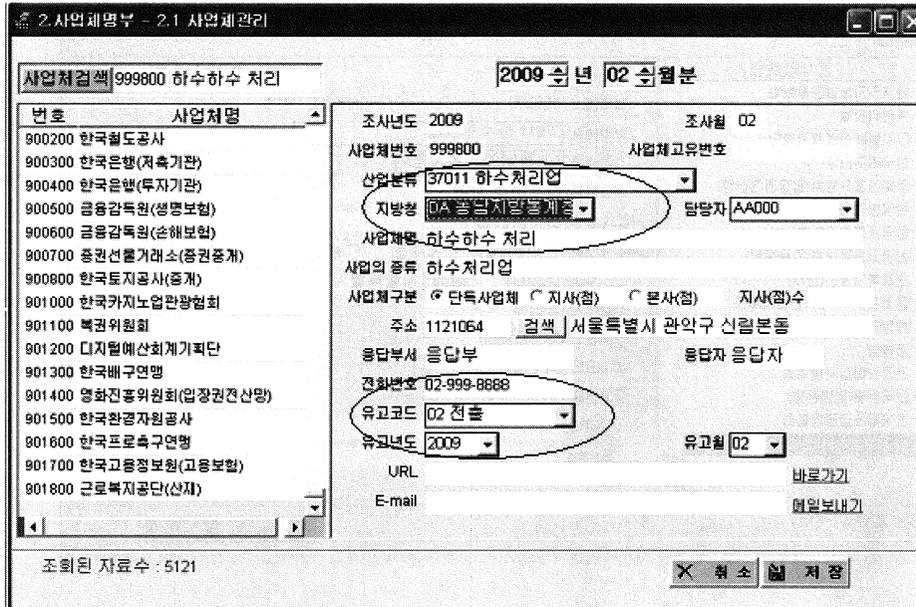
● 전출지인 서울사무소(AA)의 처리

- 전출된 지역(사무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 [2.1 사업체 관리]화면의 해당사업체에서 [수정] 버튼 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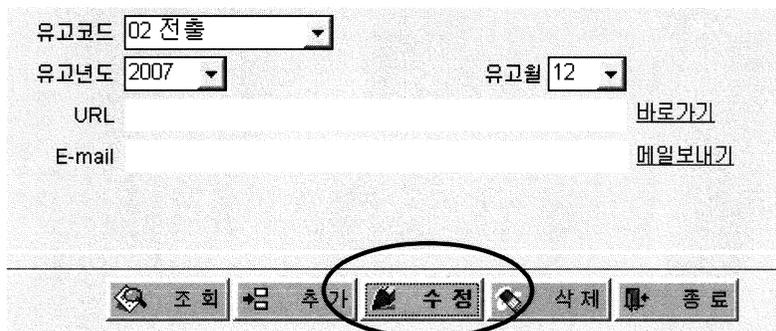


- 유고코드를 전출(02)로, 지방청코드를 전입지인 동남지방청(DA)로 변경한 후 [저장]키를 누름



● 전입지인 동남지방청(DA)의 처리

- 사업체가 전출된 사무소의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처리
- [2.1 사업체 관리] 화면의 해당사업체에서 [수정]버튼을 누름



- 유고코드를 전입(01)으로, 전입 담당자 및 주소를 수정한후 [저장]키로 변경함

2. 사업제명부 - 2.1 사업제관리

사업제 검색 999800 하수하수 처리

2009년 02월분

번호	사업제명
901000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901100	복권위원회
901200	디지털예술평화기획단
901300	한국배구연맹
901400	영화진흥위원회(입장권전산망)
901500	한국환경자원공사
901600	한국프로축구연맹
901700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901800	근로복지공단(산재)
901900	문화재청 사적지 관리사무소
902000	휴양림 및 펜션(전자상거래)
902100	경찰청
9022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2300	한국은행(일반은행)
902400	한국골프장경영협회
999800	하수하수 처리

조사년도 2009      조사월 02

사업제번호 999800      사업제고유번호

산업분류 37011 하수처리업

지방청 DA 동남지방통계청      담당자 DA000 박승재

사업제명 하수하수 처리

사업의 종류 하수처리업

사업제구분  단독사업체    지사(점)    본사(점)   지사(점)수

주소 1121064      검색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응답부서 응답부      담당자 응답자

전화번호 02-999-8888

유고코드 01 전입

유고년도 2009      유고월 02

URL      바로가기

E-mail      메일부내기

조회된 자료수 : 5121

취소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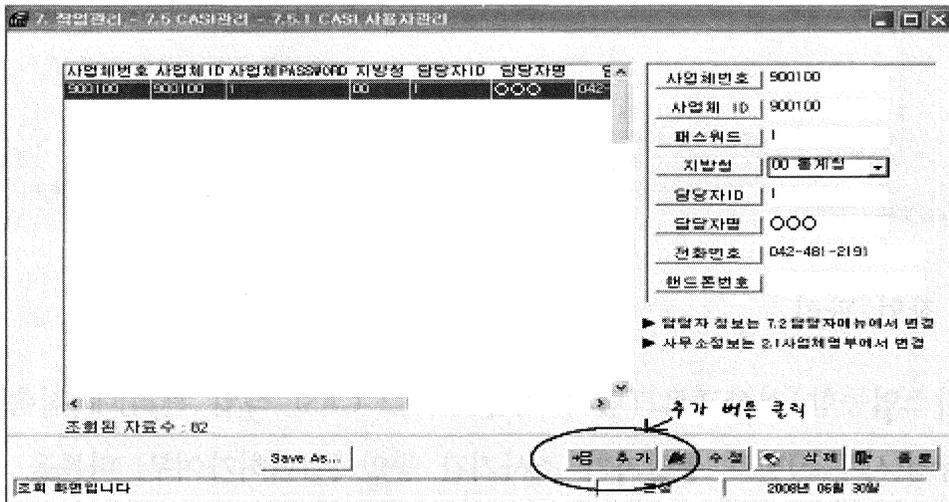
⇒ 사무소 변경은 유고코드를 [02 전출]로 했을 때만 가능함

4) 인터넷입력방식(CASI) 사업체 관리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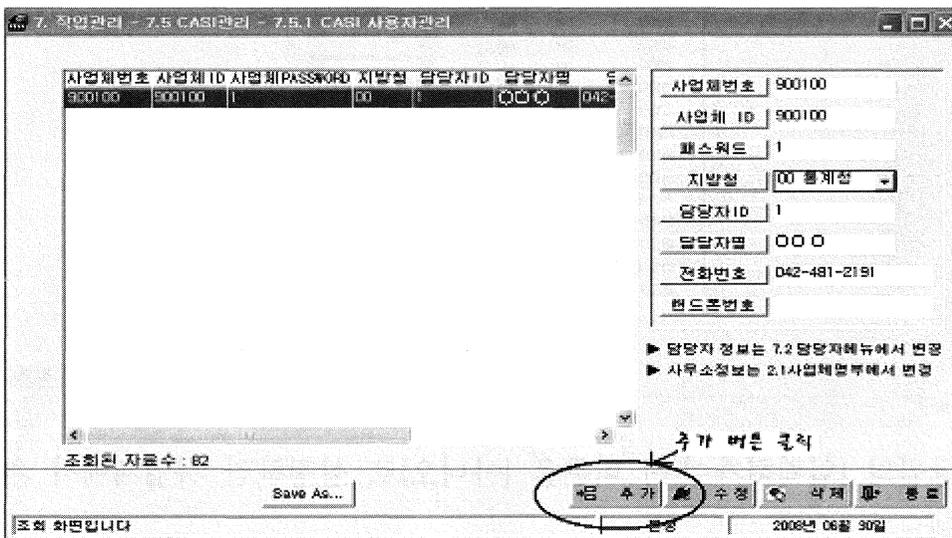
◎ 사업체 관리

가) 사업체의 인터넷조사 등록 및 ID, 비밀번호 부여 방법

- ① 서비스업동향 전산프로그램의 메뉴 [7.5.1 CASI 사용자 관리] 접속 후 우측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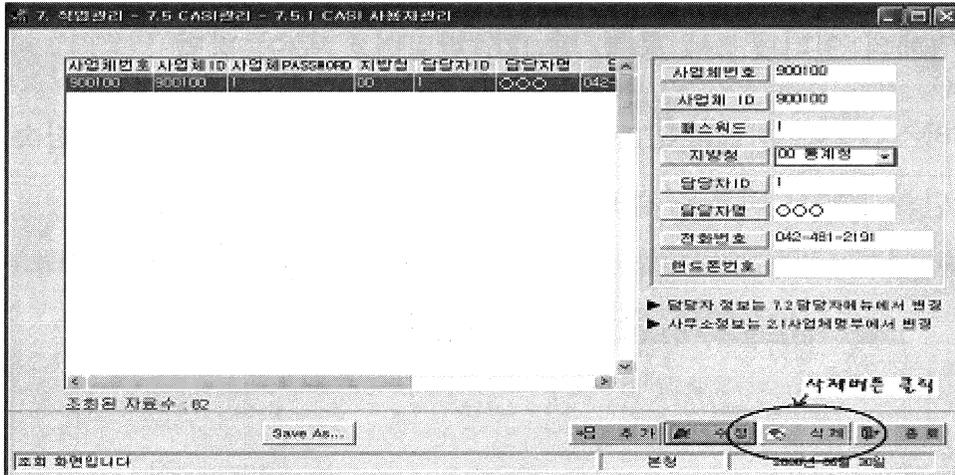


- ② 대상 사업체의 사업체번호를 입력한 후 서비스업동향 인터넷조사 사이트에서 사용할 ID 및 패스워드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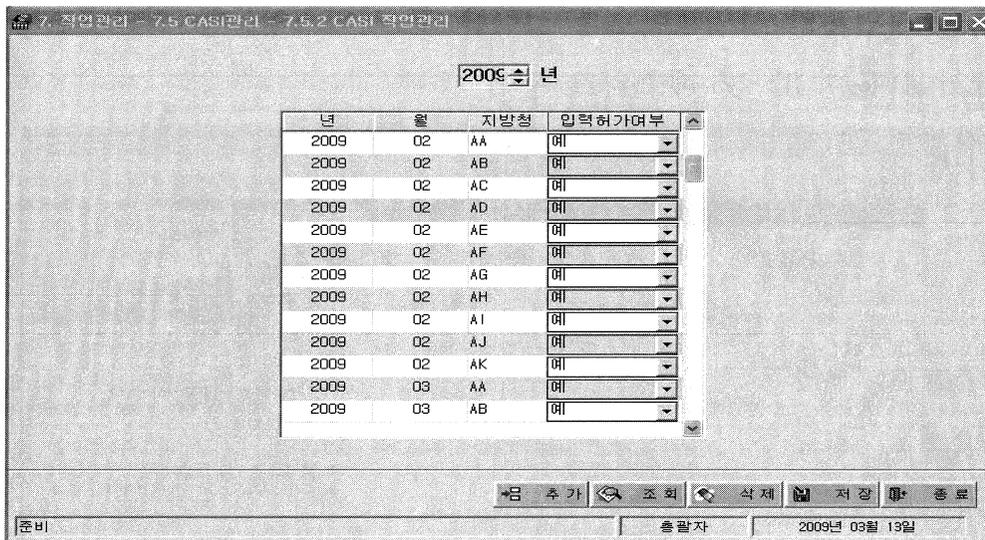
## 나) 사업체의 인터넷조사 등록 해제 방법

- ① 해제를 원하는 사업체에 마우스를 이동한 후 클릭
- ② 우측 하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조사 등록 해제



### ● CASI 작업 관리

- ① 서비스업동향 전산프로그램의 메뉴 [7.5.2 CASI 작업 관리]에 접속
- ② 지방청(사무소)별로 **총괄자**가 조사기간 동안 [입력허가여부] 버튼을 이용하여 매달 조사대상월의 자료입력을 탄력적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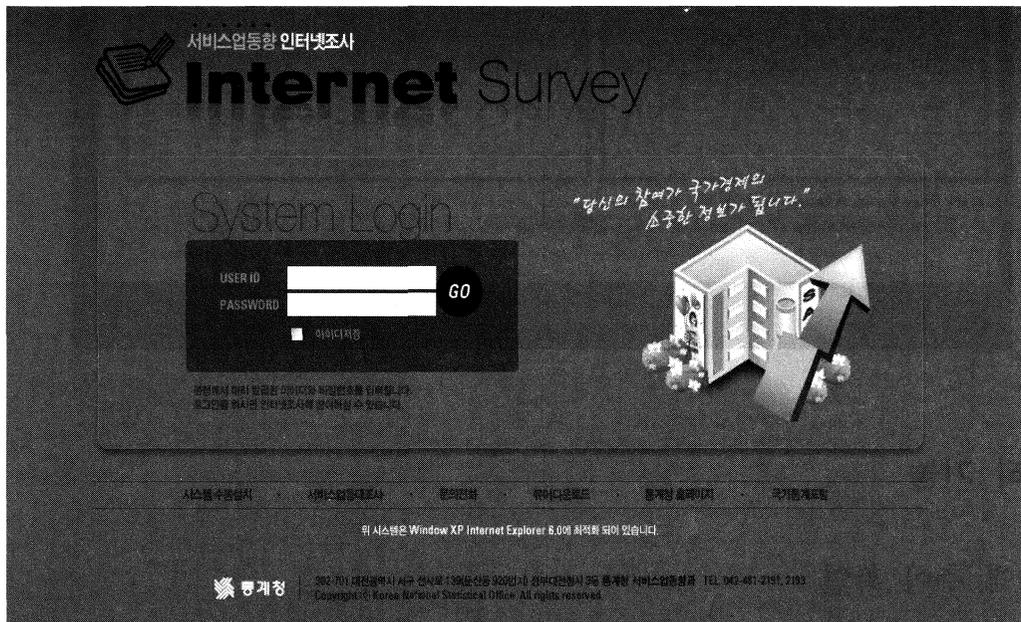


(예) 해당월의 [입력허가여부] 버튼을 [아니오]로 설정하면 사업체에서 자료 입력 불가능

## 5) 인터넷조사(CASI) 사용 방법

### 가) 서비스업동향조사 인터넷조사 사이트 접속

- 인터넷주소창에 서비스업동향조사 인터넷조사의 URL(서비스업 <http://se.nso.go.kr>)을 입력하여 사이트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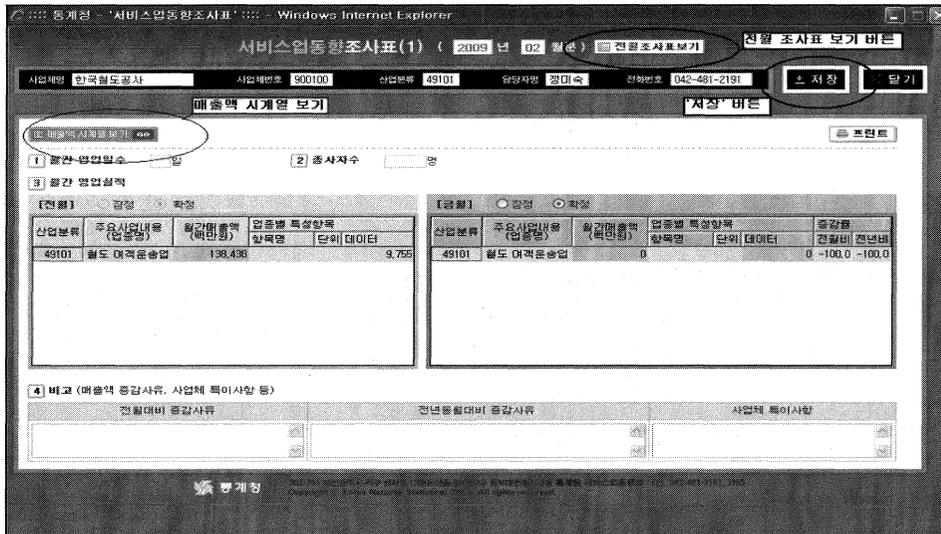
### 나) 로그인

- 서비스업동향조사 전산프로그램에서 부여한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 다) 입력 및 저장

- 조사요령을 참고하여 ①월간 영업일수, ②종사자수, ③월간 영업실적, ④비고 등을 작성
- 조사항목 작성 완료 후 우측 상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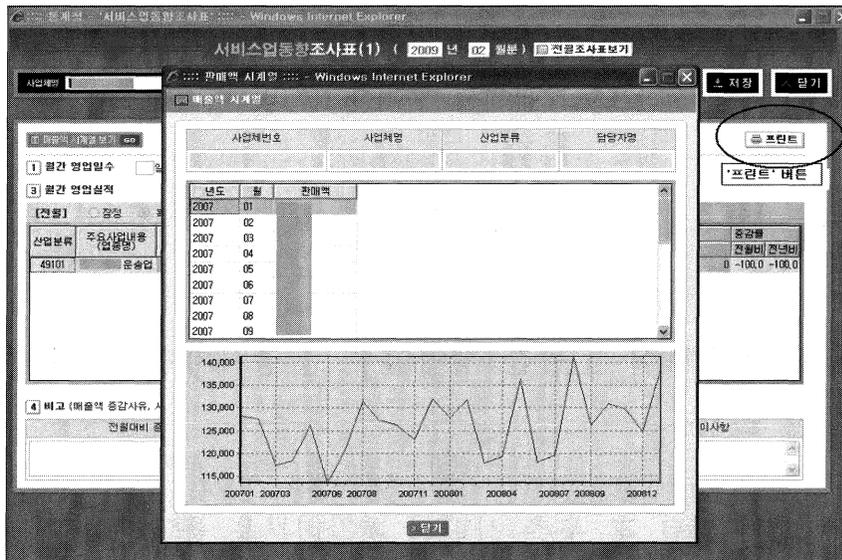
- 전전월 및 전월의 잠정자료를 확정자료로 수정하는 경우 상단의 [전월조사표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전월 및 전월의 자료 수정. 단, 전월의 잠정자료는 금월조사표에서도 확정자료로 수정 가능



## 라) 기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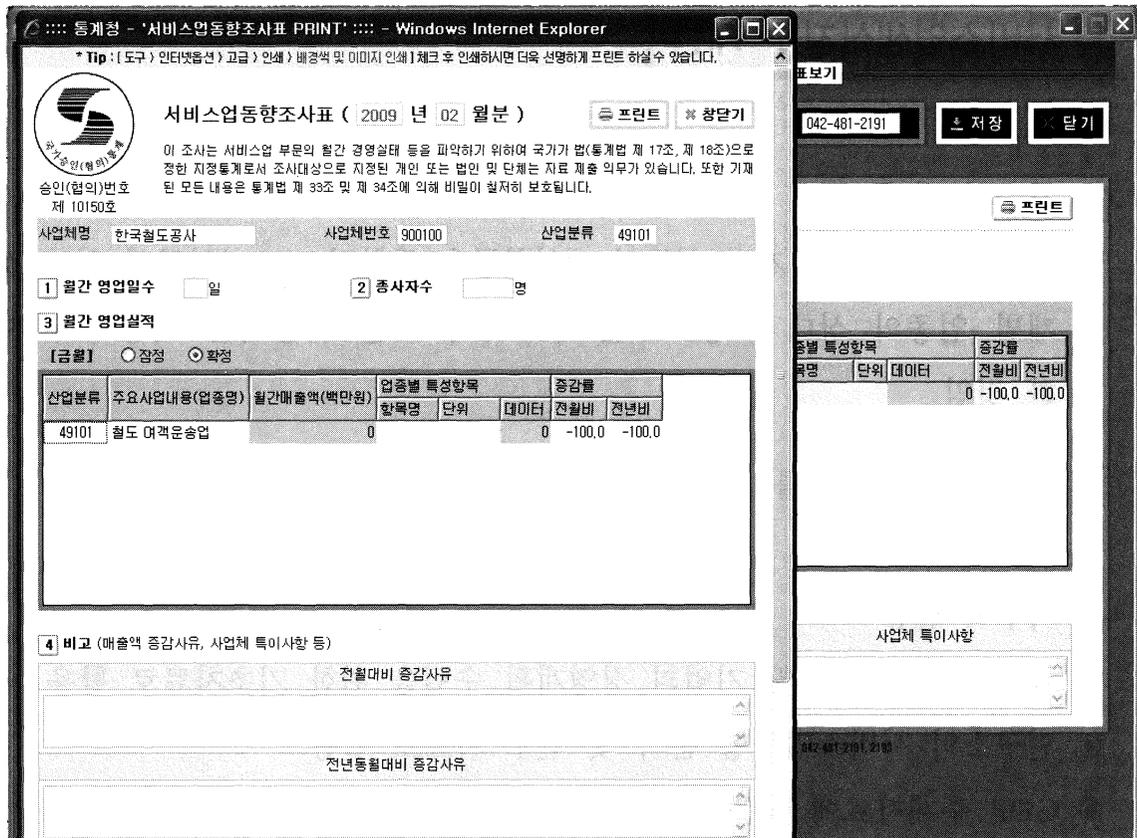
### ● 매출액 추이 확인

- 좌측 상단의 [매출액시계열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액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조사표 출력 기능

- 우측 상단의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월의 조사표를 출력할 수 있음



## II

##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 개요

## 1.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념

## 가. 지수의 정의

- ◎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임
- ◎ 기준년도(2005년)를 100.0으로 하여 월별로 산정

## 나. 지수의 활용

- ◎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연구소의 서비스업동향 분석 및 연구 자료로 활용
- ◎ GDP 추계자료에 활용

## 2. 연혁

- ◎ 2000년 2월 : 지수시산(1996년 기준으로 1999년 1월분 지수부터 작성)
- ◎ 2000년 8월 : 최초 공표
- ◎ 2004년 3월 : 2000년 기준 개편 완료 및 신지수 공표
- ◎ 2005년 3월 : 부동산공급업, 정규교육기관(학교), 예술학원 등 업종 추가
- ◎ 2005년 9월 : 계절조정지수, 특수분류지수 신규 작성
- ◎ 2008년 3월 : 2005년 기준 개편 완료 및 신지수 공표
- ◎ 2009년 3월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적용

### 3. 지수작성 포괄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개정, 2007. 12. 28.)상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3개 대분류 업종

작성종 업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제외	O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U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 4. 지수 분류체계

- 업종지수
  - 총지수(도소매업 등 지수작성대상 13개 산업대분류를 종합)
  - 대·중·소분류 등 업종별 지수
- 특수분류지수(6개 분류)
  - 정보통신기술(ICT), 관광, 환경, 물류, 스포츠, 문화서비스업

### 5. 가중치

- 기초자료
  - 서비스업총조사, 운수업통계조사 결과자료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산정

\* 부가가치 항목 : 인건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간접세(보조금 공제)

◎ 확대가중치 적용

- 비채택 업종의 부가가치를 세분류내 채택 업종의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해당업종이 없을 경우 또는 비채택분의 비중이 과도한 업종은 상위분류로 확대 배분

◎ 업종별 구성비 산정

- 2005년도 업종별 부가가치를 추정하여 서비스업 전체를 1000.00분비로 하여 구성비를 산정

## 6. 디플레이터

◎ 경상지수를 불변지수로 바꾸기 위하여 작성

◎ 이용자료 : 2005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 최종 수요항목별 생산유발의존도에 의거 소비지출, 투자의존도 크기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분 적용

## 7. 지수편제

◎ 지수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을 이용

$$I = \frac{\sum \frac{V_t}{V_0} \times W_0}{\sum W_0} \times 100.0$$

\*  $V_0$  : 기준시점 매출액,  $V_t$  : 비교시점 매출액,  $W_0$  : 업종별 가중치

◎ 위 산식을 풀어보면

- 최소단위 업종지수

$$\cdot \text{업종 지수} = \frac{\text{비교시 월별 매출액}}{\text{기준시(2005년) 월평균매출액}} \times 100$$

- 상위 업종지수

$$\cdot \text{업종 지수} = \frac{\sum(\text{최소단위 업종지수} \times \text{업종 가중치})}{\sum \text{업종 가중치}}$$

## 8. 지수작성 방법

◎ 경상지수

- 최소단위 업종별 지수는 해당 월의 경상금액으로 평가한 매출액 등 업종별 지수의 기초자료를 기준년도(2005년)의 월평균 업종별 기준액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상위 업종은 업종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물가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하며, 월별경상매출액 중 가격 변동분을 제거하여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

◎ 계절조정지수

- 불변지수를 산출된 계절인자로 나누어 작성하며 계절의 변화에 의한 요인을 제거하여 서비스업동향을 순수 경기변동 측면에서 파악

## 9. 지수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가. 기초자료의 성격

- ◎ 서비스업종은 통일된 지수 작성 계열에 대한 선정이 곤란
  - 업종에 따라 기초조사 내용도 매출액, 판매액, 영업수익, 수수료수입액 등 업종별 계열이 다양함
  - 따라서 지수작성시 업종별로 생산활동의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계열을 선정하여 기초자료로 채택

### 나. 기초자료

- ◎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자료
- ◎ 외부기관 행정 및 통계자료(금융·보험업, 의료업 등) 등을 종합

## 10. 지수개편

- ◎ 목적
  - 서비스업의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
  -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와 기준년도를 일치시켜 지표간에 상호 비교 및 분석과 지수 이용도 제고

◎ 주기 : 0, 5자 연도를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실시

- 개편을 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연간보정을 실시

※ 지수 계열 및 자료 수집 기관

업종	지수 계열	자료수집 기관
자동차판매업 *	월간 수입자동차 판매액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차량용 연료소매업	월간 차량용 연료 판매액	한국석유공사
가정용 연료소매업	월간 가정용 연료 판매액	한국석유공사
철도운송업	월간 운수수입	한국철도공사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	월간 영화관 입장권 판매액	영화진흥위원회
일반은행 *	월간 대출금 평균잔액, 영업수익	한국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월간 대출금 말잔액	한국은행
투자기관	월간 대출금 말잔액, 간접상품잔액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보험 및 연금관련 서 비스업 *	월간 생명보험, 손해보험 비례수당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업	월간 영업수익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업	월간 경과보험료수입	금융감독원
의료보험업	월간 보험료 수입(징수액, 결산기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금융시장관리업	월간 영업수익	한국거래소
증권 및 선물중개업	월간 주식거래대금, 간접투자상품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부동산 중개업	월간 부동산 거래실적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한국토지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초·중·고등학교	월간 경비지출액	시도 교육청
대학교 *	월간 경비지출액	기획재정부
병원업	월간 청구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업	월간 청구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주장운영업	월간 경마권, 경륜권, 경정권 판매액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골프장 운영업	월간 골프장 내장객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지정 폐기물 수집운 반업 및 처리업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월간 폐기물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한국환경자원공사
상위 업종 이외의 서비스업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결산 자료), 경비지출액	서비스업동향조사(통계청)

※ 일부업종(\*) 표본조사 병행

III

## 서비스업관련 부록

### 1. 조사지침 관련 사례

#### < 일반적인 사항 >

##### 1. 매출액 단위를 백만원으로 조정한 이유는?

- 조사단위를 조정하는 것은 다른 통계조사(서비스업총조사 등)와 조사 단위를 일치하여 조사시 단위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함

##### 2. 소규모 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백만원 미만으로 조사되는 경우는?

- 백만원 단위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기입하며, 사사오입 후 0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체 특이사항에 실제 매출액을 기입함  
(예 : 760,000원인 경우 → 1백만원으로 기입  
350,000원인 경우 → 0백만원으로 기입하며, 특이사항에 매출액 35만원이라고 기입함)

##### 3. 여러 업종을 겸업할 경우 매출액의 조사방법은?

- 전수층인 경우, 주사업내용 이외의 업종이 일정규모(30%)이상이면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구분 조사
- 규모가 작은 표본층이거나 부득이 회계처리 또는 경영관리상 분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산 조사
- 포괄산업분류내의 겸업인 경우는 합산하여 조사

#### 4. 본사와 지사·점에서 조사하는 기준은?

- 본사에서 일괄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는 본사에서 지사(점)의 실적까지 포함하여 조사하며, 지역 총괄, 지역 본부 등의 명칭과 지사(점)에서 매출액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관할 지방청(사무소)에서 지사(점)의 실적만 조사
- 본사에서 조사하는 지사(점)가 표본사업체로 선정된 경우는 사업체 대체를 하여야 함

#### 5. 정부 및 지자체의 소속 및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의 조사방법은?

- 소속기관의 사업소 중 월별 수입이 발생하여 매출액 조사가 가능한 예술회관, 공원관리, 도서관, 박물관 등과 지자체의 투자기관인 시설공단, 직속기관인 연구원, 교육원 등은 조사
- 제공서비스의 가격이 시장가격 수준인 경우(월별 수입이 해당 사업체의 실제 운영경비 수준)는 월별 수입으로 조사
- 하지만 무상 혹은 무상에 가깝게 제공되는 경우(해당 사업체의 운영경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6. 겸업사업체는 업종별 매출액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조사해야 하는지?

- 업종별 매출액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분리 조사하지만 매출액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하는 경우는 매출액이 큰 업종으로 포함 조사함

7. 수상화물취급업의 경우 하역인부는 급여를 하역업체가 아닌 항만노조를 통해 지급 받으며 노조에서 관리하여 실제 조사대상처가 다른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 해당사업체를 조사 대상처로 관리하고 조사가 가능한 곳에서 조사

8. 사업내용에 따라 산업분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산업분류를 결정하는 기준은?

- 산업분류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크기에 의해 주산업을 결정하나, 가급적 기존의 산업분류를 유지

9. 특성항목과 매출액의 증감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출액을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 많은 업종의 특성항목을 조사하는 이유는?

- 대부분의 특성항목은 매출액과 증감 방향이 일치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다른 경우에는 조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10. 종합휴양업(조사표 2)으로 조사하는 업종은?

- 종합휴양업(조사표2)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휴양콘도운영업(55113)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조사

11. 전수층을 구분하는 절사점의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및 운수업통계조사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지침서에 수록된 업종별 절사점을 참고

## 〈 조사항목에 관한 사항 〉

### 12. 건물 임대업에서 월세와 전세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임대료 수입 조사 방법은?

- 전세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수입에 포함 조사를 하며, 임대수입은 주거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환산 조사

예) 월세 : 300만원, 전세 : 1억,

조사당월의 주거은행의 정기예금금리 : 4.55%

→ 월임대료수입은 338만원(300만원+(1억×0.0455/12개월)으로 조사

### 13. 연수원, 직원훈련기관 등의 경우 매출액은 경상경비집행액을 조사해야 하는데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수강료 수입이 있을 경우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 직원훈련기관의 매출액은 경상경비집행액(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만을 조사

### 14. 국립공원의 매출액 조사요령은?

- 국립공원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입장료, 주차장수입, 시설임대수입 등)을 조사
  - ※ 2007.1부터 입장료 폐지되어 입장료 부분 제외하고 조사함. 차후 입장료 관련 정책 변경시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후 조사

### 15. 학원에서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인원수도 중복하여 파악하는지?

- 여러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수강인원은 1인으로 산정하여 조사

16. 육상화물취급업은 취급화물량 조사가 어려움, 이에 대한 대처는?

- 육상화물취급업의 취급화물량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수상 및 항공화물 취급업 등 조사가 가능한 업종에서만 조사

17. 골프장의 캐디(게임보조요원)가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수인 경우 골프장의 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 인력공급업체에 소속된 경우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종사자수에서 제외

18. 예식장의 경우 예식은 없이 부대시설의 수입만 발생된 경우에 매출액 조사방법은?

- 예식장에서 직영하는 부대시설 수입도 포함 조사하므로 예식은 없이 직영하는 부대시설의 수입만 발생된 경우도 매출액으로 조사하며, 단 면세점의 수입은 특이사항에 기재

☞ 호텔업의 경우도 음식점, 면세점 등 부대시설의 수입을 모두 조사

19. 유치원에서 분기 또는 반기에 정액으로 납입하는 수업료의 조사방법은?

- 분기 또는 반기로 미리 납입하는 수업료의 경우는 월별로 균등 배분하여 조사

☞ 유치원과 같이 모든 원생이 분기에 일괄적으로 납입하여 금액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월별로 균등 배분하여 조사함.

- ☞ 그러나 골프장, 운동시설운영업 등의 분기별 이용료 등은 모든 이용자가 일정한 시점에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월별 균등 배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용료 수입이 발생한 월에 모두 조사

**20. 건축설계업 등과 같이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 매출액을 조사하는 요령은?**

- 특정 사업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월별 진척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진척률에 의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월별 수입금액을 조사함

**21. 병설유치원과 같이 수업료는 모두 교육청에 납입되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조사방법은?**

- 수업료는 제외하고 봉급 등 경상경비지출액을 매출액으로 조사

**22. 호텔업의 부대시설 수입이 객실수입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으로 조사하는지?**

- 호텔업의 음식점, 욕탕시설 등은 호텔업의 편의시설에 속하므로 매출액에 관계없이 호텔업으로 조사함

**23. 음식점 등의 사업체에서 직원근무일수와 고객사용일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일수 조사방법은?**

- 직원근무일수로 영업일수를 작성함

- ☞ 조사당월 중 휴무 없이 가동 중인 창고업, 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서비스 활동이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은 조사당월의 전체일수를 영업일수로 작성

**24. 조사대상사업체의 종사자수에 다른 사업체에서 받은 종사자수가 포함되는지?**

- 인력공급업체의 종사자수에 다른 사업체로 보낸 종사자수로 포함되므로 조사대상사업체에서는 종사자수에서 제외함

**25.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 종사자 등의 종사자수에 대한 조사 방법은?**

- 조사대상월의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용되고 있는 인원을 종사자수로 조사

**26. 운송업 중 수송인원수 파악이 불가능한 업종의 조사방법은?**

- 수송인원수의 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파악하여 조사

**2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특성항목의 파악이 불가능한 업종의 조사방법은?**

-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공중파 방송업, 도서관 등의 업종은 관람객수 또는 입장객수의 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파악하여 조사

**28. 조사대상사업체의 자원봉사자 수를 종사자수에 포함하는지?**

- 종사자수에서 제외

- ☞ 자원봉사자의 예시 - 여름방학 동안 박물관 등에서 무급으로(차비와 점심 식사는 제공) 종사하는 대학생

28. 새로 배포된 조사표에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특성항목이 빠져 있는데, 조사에서 제외된 것인가?

- 종래 조사표상에 숙박업의 '객실수'와 음식점업의 '객석수' 특성항목이 있었으나, '09년도 조사표에서는 이를 제외했으므로 조사하지 않아도 됨

29. 조사대상업체인 한식당에서 지역내 축제기간(1주일) 동안 식당 문을 닫고 행사장에서 영업을 했다. 이 경우 행사장 영업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가?

- 행사장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시키고, 특이사항란에 기재

30.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의 경우 전세금 및 보증금은 조사대상 월의 시중은행 정기에금금리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환산하여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중은행의 정기에금금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나요?

- 시중은행의 정기에금금리는 해당 지역 주거래은행의 정기에금금리를 적용함

31.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노인거주 복지시설(8711) 조사방법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 노인거주 복지시설(8711)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해당 시군구청에서 직접 시설로 집행되는 예산액만 조사하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지급되는 부담금은 조사에서 제외함

**32. 유치원의 방학기간 동안 영업일수의 조사방법은?**

- 방학기간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업일수는 직원 근무일수를 조사

**33. 2009년 1월부터 초중 및 고등학교 조사방법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 2009년 1월부터 초중 및 고등학교 경상경비지출액 모두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여 일괄조사

**34. 시도교육청 조사할 때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을 어떻게 이용하여 초중 및 고등학교 경상경비를 조사하나요?**

- 에듀파인 메뉴 중 “재정분석시스템 - 사업정보분석 - 집행실적관리 - 경상경비 집행실적”에서 회계연도와 집행연월 선택한 후 조회 하면 해당월의 초·중 및 고등학교별 경상경비집행액이 출력됨

**35. 시도교육청 조사할 때 초중 및 고등학교 종사자수 기준은?**

- 종사자수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수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

**36. 상조회사의 매출액 조사방법은?**

-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아닌 실제 상조비로 지출된 금액을 조사

37.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체의 매출액에 광고수입이 포함되는지?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의 매출액은 영업수입(광고수입, 시청료 수입 등) 및 유선임대료 수입을 조사

### 〈 산업분류에 관한 사항 〉

38. 예식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체가 음식점업을 겸업하면서 예식장 사용료는 무료일 경우 산업분류는?

-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된 사업인 예식장업으로 분류
- ☞ 호텔, 휴양콘도, 예식장 등은 부대시설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예식장업으로 분류

39. 장의사업의 산업분류는?

- 운송만하는 경우는 49233(장의차량운영업)
- 운송과 장의용품을 취급하는 경우와 운송, 장의용품 취급 및 장례식장 운영은 96921(장례식장 및 장의업)으로 조사

40. 콘도식 민박시설운영업인 펜션의 산업분류는?

-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55119)로 분류함

**< 사업체 관리 >**

41. 표본사업체가 대체된 경우 사업체 관리번호가 '00' 에서 '01' 로 부여되고 있는데 연도가 바뀌는 경우 처리방법은?

- 연도의 변경과 관계없이 차기 개편까지 부여된 관리번호로 지속됨

42. 전수층에서 누락된 사업체를 신규로 발견하였을 경우 대처방법은?

- 서비스업동향 명부에 없는 전수층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체 및 누락사업체는 발견 즉시 대상사업체에 포함하여 매월 조사해야 함

43. 표본사업체 대체시, 종사자수와 매출액의 유사여부를 감안하여 대체하고 있는데 종사자수와 매출액 중 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 매출액과 종사자규모 모두 유사한 규모를 대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거나, 두가지 모두 합당한 대체사업체가 없는 경우 매출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대체

44. 예식장업 표본 대체시 상시부폐를 병행하는 사업체로 대체가 가능한지?

- 상시부폐의 매출액 비중이 큰 경우 예식장업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가급적 다른 사업체로 대체

## 〈 전산 관련 〉

45. 사업체 번호가 4001-00인 사업체가 폐업하여 대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체하여야 하나요?

- ① 사업체4001-00 유고 - 메뉴[2.1 사업체관리]에서 사업체4001-00을 조회하여 '수정'버튼을 클릭한 후 유고코드를 입력(예: 13 폐업 등)하고 '저장'버튼을 클릭
- ② 사업체4001-01 대체 - 메뉴[2.1 사업체관리]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대체되는 사업체4001-01 추가한 후 유고코드를 입력(03 신규)하고 '저장'버튼을 클릭

46. 전수층 사업체가 폐업하여 대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체하여야 하나요?

- 전수층 사업체를 폐업처리하고(46번의 ① 참고), 대체할 신규사업체를 추가할 때에는 서비스업동향과에서 별도의 사업체번호를 부여받아 조사

47. CASI 사업체에서 조사대상기간에 웹사이트 접속하였는데, '조사대상기간이 아님'이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월 조사대상 기간에 지방청 총괄자(담당자 구분 4, 예: AA, BA)가 메뉴 [7.5.2 CASI작업관리]에서 조사대상월의 입력허가여부를 '예'에 체크하여 관리

48. 서비스업동향조사 인터넷조사(CASI) 웹사이트 접속 시 에러코드404의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조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에러코드404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CASI사이트를 등록하거나, 팝업차단 설정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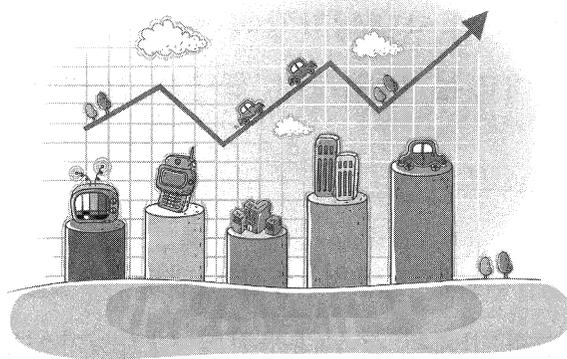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CASI사이트 등록

익스플로러 창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에 CASI 사이트url 등록(<http://se.nso.go.kr>)

- 팝업차단 설정

익스플로러 창 상단의 도구 → 팝업 차단 → 팝업차단 설정 → 허용할 웹사이트 주소에 \*.nso.go.kr 입력 → 추가버튼 클릭 → 닫기

(팝업차단을 수행한후 하단에 [사용자지정수준]- Active X 컨트롤 및 플러그인 설정(사용안함이 있으면 안됨))



## 2. 통계법 관련 조항

### 가. 통계법 [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84호]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 당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에 한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자료제출명령)**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실지조사)** ①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자료제출요구)** ①통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다)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 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제40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괄산업 분류

※ 포괄산업분류내 산업분류가 변경된 경우 계속 조사하며, 조사표입력시 반드시 변경된 산업분류를 입력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37-39)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7011	하수 처리업
	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37021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3	건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	건축 폐기물 처리업
H. 운수업(49 ~ 52)	4910	철도 운송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2	시외버스 운송업	4922	시외버스 운송업
	4923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4931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1	택배업
			49402	늘찬 배달업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110	정기 항공 운송업	51101	항공 여객 운송업
			51102	항공 화물 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101	일반 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52912	여객·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1	공항 운영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5294	화물 취급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5511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1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11	호텔업	55111	호텔업
	55112	여관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611	일반 음식점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2	기관구내식당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점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9	기타 음식점업	5619	기타 음식점업
	56191	기타 음식점업(제과점)	56191	제과점업
	56192	기타 음식점업(패스트푸드 등)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1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22	비알콜 음료업점			
		56220	비알콜 음료업점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6110	우편업	61100	우편업
	6121	유선 통신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	무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관리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6412	일반 은행	64121	국내은행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6420	투자기관	64201	자산운용회사
	6491	여신금융업		
	64911	금융리스업	64911	금융리스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4919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64919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6511	생명 보험업	65110	생명 보험업
	6512	손해 및 보증 보험업		
	65121	손해 보험업	65121	손해 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6513	사회보장 보험업		
	65131	건강 보험업	65131	건강 보험업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3	연금업	65303	연금업
	6611	금융시장 관리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66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66121	증권 중개업
			66122	선물 중개업
	66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 사정업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6811	부동산 임대업		
	68112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1	부동산 관리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	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68222	부동산 감정평가업	68222	부동산 감정평가업
	691	자동차 임대업		
			69110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69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69291	서적 임대업
			69292	의류 임대업
			692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9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 73)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1	변호사업
			71102	법리사업
			71103	법무사업
	712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202	세무사업
	7131	광고 대행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 73)	721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74 ~ 75)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7422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110	고용 알선업
			75120	인력 공급업
	7521	여행사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P. 교육 서비스업 (85)	8511	유아 교육기관	85110	유아 교육기관
	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85211	초중학교	85211	초중학교
	85212	일반고등학교	85212	일반고등학교
	8530	고등 교육기관		
			85301	전문대학
			85302	대학교
			85303	대학원
	8550	일반 교습 학원		
			85501	일반 교과 학원
		85502	외국어 학원	
		85503	방문 교육 학원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85509	기타 일반 교습학원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8562	그외 기타 교육기관	85620	예술 학원	
			85630	사회교육시설	
	8564	직원훈련기관	85640	직원 훈련기관	
	8565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5651	운전 학원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5691	컴퓨터 학원	
			85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 87)	8610	병원	86101	종합 병원
				86102	일반 병원
			86103	치과 병원, 한방 병원	
8620		의원	86201	일반 의원	
			86202	치과 의원	
			86203	한의원	
8690		기타 보건업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690	기타 보건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 91)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 단체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기타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90212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 91)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411	산업 단체		
			94110	산업 단체
	9521	자동차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31	가전제품 수리업		
			95310	가전제품수리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6121	욕탕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2	마사지업
	9691	세탁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96912	가정용 세탁업
		96913	세탁물 공급업	
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개인 서비스업			
		96991	예식장업	

#### 4. 업종별 절사점(종사자수) 및 산업분류 참고표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절사점
49101	철도여객운송업	본청조사
49102	철도화물운송업	본청조사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전수조사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6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201
49231	택시 운송업	386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52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8
49401	소포 송달업	77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전수조사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127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30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72
51100	정기항공운송업	전수조사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전수조사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171
52101	일반 창고업	62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33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20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22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13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절사표본
52931	공항 운영업	전수조사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전수조사
52991	화물운송주선업	절사표본
55111	호텔업	95
55112	여관업	30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56
56111	한식 음식점업	118
56112	중식 음식점업	54
56113	일식 음식점업	47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90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31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139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118
56191	제과점업	27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67
56193	치킨 전문점	67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4
56219	기타 주점업	41
56220	비알콜 음료업점	45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절사표본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절사점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절사표본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0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0
59120	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59141	영화관 운영업	본청조사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
60100	라디오 방송업	53
60210	지상파 방송업	227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29
60222	유선 방송업	61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40
61100	우편업	전수조사
61210	유선통신업	절사표본
61220	무선전화업	절사표본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절사표본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50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절사표본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48
63111	자료 처리업	58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58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111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11
64121	국내은행	절사표본
64131	신용조합	본청조사
64132	상호저축은행	본청조사
64201	자산운용회사	본청조사
64911	금융리스업	절사표본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절사표본
64919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절사표본
65110	생명 보험업	본청조사
65121	손해 보험업	본청조사
65122	보증 보험업	절사표본
65131	건강 보험업	전수조사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본청조사
65301	개인 공제업	55
65302	사업 공제업	113
65303	연금업	전수조사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전수조사
66121	증권 중개업	본청조사
66201	손해 사정업	27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90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전수조사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7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절사표본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절사표본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절사점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229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43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본청조사
68222	부동산 감정평가업	절사표본
69110	자동차 임대업	절사표본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70
69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70
69291	서적 임대업	70
69292	의류 임대업	70
692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0
69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절사표본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절사표본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130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68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절사표본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177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177
71101	변호사업	67
71102	변리사업	57
71103	법무사업	35
71201	공인회계사업	65
71202	세무사업	53
71310	광고 대행업	76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5
71393	광고물 작성업	35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9
71531	경영컨설팅업	87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34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125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40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54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2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13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82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177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27
73202	제품 디자인업	23
73203	시각 디자인업	29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17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16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12
73303	사진 처리업	20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20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107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절사점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88
7422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65
75110	고용 알선업	70
75120	인력 공급업	552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56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135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87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81
75994	포장 및 충전업	73
85110	유아 교육기관	72
85211	초·중학교	전수조사
85212	일반 고등학교	전수조사
85301	전문대학	560
85302	대학교	1,217
85501	일반 교과 학원	126
85502	외국어 학원	108
85503	방문 교육 학원	356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356
85509	기타 일반 교습학원	126
85620	예술학원	30
85630	사회교육시설	93
85640	직원훈련기관	131
85651	운전 학원	본청조사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62
85691	컴퓨터 학원	29
85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43
861	병원	본청조사
862	의원	본청조사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절사표본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절사표본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55
90121	연극단체	18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35
90123	기타 공연단체	15
90191	공연 기획업	18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5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65
90212	독서실 운영업	14
90221	박물관 운영업	59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18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37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61
91113	경주장 운영업	절사표본
91121	골프장 운영업	181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절사점
91131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87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8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50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50
91191	스포츠클럽 운영업	절사표본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6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30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25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25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27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10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절사표본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절사표본
94110	산업 단체	81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163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56
95310	가전제품 수리업	91
96111	이용업	10
96112	미용업	47
96121	욕탕업	61
96122	마사지업	26
96911	산업용 세탁업	27
96912	가정용 세탁업	24
96913	세탁물 공급업	28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53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31
96991	예식장업	76
37011	하수 처리업	76
37021	분뇨 처리업	33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13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86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본청조사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86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60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본청조사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67

## 5. 서비스업동향조사 조사표(양식)



승인(협의)번호  
제 10150 호

# 서비스업동향조사표(1)

- 일반 업종 -

200 년 월분 (확정, 잠정)

·이 조사는 서비스업부문의 월간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  
(국가지정통계 10150호) 입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  
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체명	
------	--

※행정구역분류번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자ID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① 월간 영업일수

		일
--	--	---

② 종사자수

						명
--	--	--	--	--	--	---

③ 월간 영업실적

※산업분류	(1) 주요사업내용 (업종명)	(2) 월간매출액(백만원)						(3) 업종별 특성항목								
		조	천	백	십	억	천	백	※항목명	※단위	십	만	천	백	십	일
	합 계							*****	***	*	*	*	*	*	*	*

1) 월간매출액은 업종 및 사업체 특성에 따라 매출액, 영업수익,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④ 비교(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 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 서	
			성 명	
			전 화	
			F A X	
			E-mail	

## 【조사표 작성 요령】

<p><b>I. 일반적인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통계조사의 목적은 서비스업의 월간 매출, 영업 활동 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li> <li>○ 행정구역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자ID는 통계청에서 기입</li> <li>○ 월간 매출액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작성 (예 : 54,856천원인 경우 → 55백만원으로 기입)</li> </ul> <p><b>II. 조사표 항목별 작성 요령</b></p> <p><b>① 월간 영업일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더라도 영업일수에 포함</li> </ul> <p><b>② 종사자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모두 합한 총종사자수를 기입</li> <li>○ 본사(점)의 경우는 본사(점)과 지사(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li> </ul>	<p><b>③ 월간 영업실적</b></p> <p>(1)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기입하며, 제공 서비스 (사업의종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매출액(영업수입)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입</li> </ul> <p>(2) 월간매출액(영업수입액 또는 경상경비지출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영업수입액) :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 금액(매출부가가치세액,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매출액에서 제외)</li> <li>○ 경상경비지출액 : 매월 지출한 경비 중에서 자본적 지출(건물 증·개축비,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을 제외한 경상비 지출액 (인건비+임차료+세금과 공과+감가상각비+기타비용)</li> </ul> <p><b>④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동월에 비해 <math>\pm 20\%</math>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사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증감사유란에 자세히 기입</li> </ul>
---	--

**【참고】 업종별 매출액 개념 및 특성항목**

업종	매출액	특성항목	단위
· 하수·폐기물 처리업	영업수입액(수수료)	하수 및 폐기물처리량(하수처리, 폐기물처리업만 해당)	M/T
· 운수업	영업수입액(운송수수료)	수송인원수 취급화물량	명 M/T
· 숙박 및 음식점업	영업수입액, 매출액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업수입액	총가입자수(전기통신업만 해당)	명
· 금융 및 보험업	신용카드업(수수료+이자), 금융(여신액), 보험(보험료수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업수입액(임대료, 수수료), 기성액(부동산공급업)	임대연면적(부동산임대업만 해당) 차량보유대수(운송장비임대업만 해당)	m2 대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경상경비지출액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 교육서비스업	영업수입액, 운영비용 등		
.. 중등, 고등교육기관	경상경비지출액		
.. 학원	등록비, 수강비, 부대시설운영수입 등	수강인원수(학원만 해당)	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영업수입액(입장료)	관람자수 및 입장객수	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예식건수(예식장업만 해당)	건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인(협의)번호  
제 10150 호

# 서비스업동향조사표(2)

- 종합휴양업 -

200 년 월분 (확정, 잠정)

·이 조사는 서비스업부문의 월간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  
(국가지정통계 10150호) 입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  
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체명	
------	--

※행정구역분류번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자ID
	5 5 1 1 3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① 월간 영업일수  일      ② 종사자수  명

### ③ 월간 영업실적

(1) 산업분류	(2) 월간 매출액(백만원)	(3) 업종별 특성항목															
		조	천	백	십	억	천	백	만	※항목명	※단위	십	만	천	백	십	일
① 숙박업 (551)	◦호텔(55111)																
	◦휴양콘도운영업(55113)																
	◦기타																
	소 계(551)								*****	***	*	*	*	*	*	*	*
② 음식점업(561)																	
③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 (91)	◦골프장(91121)								입장객수	명							
	◦스키장(91122)								입장객수	명							
	◦유원지 및 테마파크(91210)								입장객수	명							
	소 계(91)								*****	***	*	*	*	*	*	*	*
④ 기 타																	
⑤ 합 계(①+②+③+④)									*****	***	*	*	*	*	*	*	

☞ 종합휴양업은 각 사업(업종)부문별로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매출항목에  
구분 기입

### ④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 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 서	
			성 명	
			전 화	
			F A X	
			E - mail	

## 【조사표 작성 요령(종합휴양업용)】

<p><b>I. 업종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제1종종합휴양업)과 관광숙박업 시설(제2종종합휴양업)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시설의 종류))</li> </ul> <p><b>II. 일반적인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통계조사의 목적은 서비스업의 월간 매출, 영업활동 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li> <li>○ 행정구역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자ID는 통계청에서 기입</li> <li>○ 월간 매출액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작성 (예 : 54,856천원인 경우 → 55백만원으로 기입)</li> </ul> <p><b>III. 조사표 항목별 작성 요령</b></p> <p><b>1] 월간 영업일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다더라도 영업 일수에 포함</li> </ul>	<p><b>2] 종사자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모두 합한 총종사자수를 기입</li> <li>○ 본사(점)의 경우는 본사(점)과 지사(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li> </ul> <p><b>3] 월간 영업실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휴양업은 숙박, 음식점, 골프장, 스키장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해당업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부문별로 해당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입 (매출부가가치세액 등 간접세는 매출액에서 제외)</li> <li>· 숙박업(551)…호텔업(55111), 휴양콘도운영업(55113), 기타</li> <li>· 음식점업(561)</li> <li>·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91)…골프장(91121), 스키장(91122), 유원지 및 테마파크(91210)</li> <li>· 기타…도소매업 등</li> </ul> <p><b>4] 비교(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동월에 비해 ±20%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사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증감사유란에 자세히 기입</li> </ul>
--	--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인(협의)번호  
제 10150 호

# 서비스업동향조사표(3)

- 사회복지서비스업 -

200 년 월분 (확정, 잠정)

·이 조사는 서비스업부문의 월간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  
(국가지정통계 10150호)입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  
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체명	
------	--

※행정구역분류번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자ID
	8 7 1 1 1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① 월간 영업일수

일

② 종사자수

명

③ 월간 매출액 (경상경비지출액)

(1) 산업분류	(2) 월간 매출액 (백만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거주 복지시설 (871)	·노인거주 복지시설(8711)						
	·심신장애인거주 복지시설(8712)						
	·기타 거주 복지시설(8713)						
	소 계(871)						
② 비거주 복지시설 (872)	·보육시설(8721)						
	·기타 비거주 복지시설(8729)						
	소 계(872)						
③ 합 계 (①+②)							

④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 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서	성명	
			부서		
			성명		
			전화		
			F A X		
			E-mail		



통 계 청

## 【조사표 작성 요령(사회복지서비스업용)】

### I. 업종개요

○ 사회복지서비스업 :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이 모두 포함됨

① 거주복지시설로는 노인거주(양로, 실비양로, 노인요양, 실비노인요양), 심신장애인가주(신체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와 기타거주(아동 및 부녀자, 부랑인 등)가 있음

② 비거주복지시설로는 보육시설(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과 기타비거주복지시설(직업재활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 및 상담시설, 무료급식소 등)이 있음

### II. 일반적인 유의사항

○ 이 통계조사의 목적은 서비스업의 월간 매출, 영업활동 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행정구역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자ID는 통계청에서 기입

○ 월간 매출액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미만은 사사오입하여 작성  
(예 : 54,856천원인 경우 → 55백만원으로 기입)

### III. 조사표 항목별 작성 요령

#### ① 월간 영업일수

○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다도 영업일수에 포함

#### ② 종사자수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모두 합한 총종사자수를 기입

○ 본사(점)의 경우는 본사(점)과 지사(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

#### ③ 월간 영업실적

○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또는 예산집행액임

○ 사회복지서비스업(87) 매출액 개념

· 산업분류별 각 시설에서 해당 시·군·구로 월별 결산(보고)하는 경상경비집행액을 매출액으로 기입

⇒ 단, 월별 미결산(보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설로 매월 지급하는 예산집행액(운영비)을 매출액으로 기입

#### ④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동월에 비해  $\pm 20\%$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사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증감사유란에 자세히 기입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편

## 도소매업 부문

### I. 도소매업 조사지침

- 1 현장조사 유의사항
- 2 조사대상
- 3 조사표 작성방법
- 4 사업체 관리 요령

### II. 소매판매액통계 작성 개요

### III. 도소매업관련 부록

- 1 조사지침 관련 사례
- 2 대표업종별 포괄산업분류
- 3 상품분류 기준
- 4 사업체변동 전산처리방법
- 5 도소매업부문 조사표(양식)

## I 도소매업 조사지침

### 1. 현장조사 유의사항

#### 가. 조사표 작성전

- 조사담당자는 대상사업체의 사업주(또는 응답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체의 영업실적 및 유고발생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록
  - 사업체의 세일행사, 휴업, 진출 등을 파악직후 조사기록부 등에 바로 기재하여 금월 또는 익월 조사시에 활용
- 사업체 변동사항 사전파악 및 처리
  - 매월15일까지 사업체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유형별로 처리('4. 사업체관리 요령' 참조)
    - 사업체 조사중지 및 표본층 사업체 대체 등은 지침서를 숙지하고 서비스업 동향과와 협의를 통해 15일까지 완료
    - 사업체명 및 관할구역내 소재지 변경 등은 내용만 보완
  - 휴업사업체는 매월 확인하며(판매액 '0'으로 조사), 휴업상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서비스업동향과에 통보하여 조치
- 사업체의 산업분류 변경 또는 착오 여부를 파악 및 처리
  - 사업체의 영업활동 변동시 산업분류 변경이 되는지 확인 및 서비스업동향과에 질의
    - 대표업종내에서 산업분류 변경은 변경된 산업분류를 통보후 계속 조사

- 대표업종을 벗어나는 산업분류 변경은 전수층의 경우 조사중지하고, 표본층은 사업체대체

- 전자조사방식(CASI)으로 조사하는 사업체는 3개월 기준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체 현황을 파악해야 함

## 나. 조사표 작성시

- 신규 사업체는 조사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경상업무에는 조사기록부 이용 가능

- 조사기록부에 매월의 조사사항을 기록하여 합계착오 등 조사오류 방지 및 내용검토 자료로 활용

- 상품판매액 및 재고액은 백만원 단위로 조사

- 백만원 미만인 사업체는 사사오입하여 작성

-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형매장의 경우 특정매입매장, 임대매장의 매출액을 수수료가 아닌 판매액으로 작성해야 함

- 특정매입매장의 매출액은 결산서상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체의 총매출액에 포함되나 임대매장의 매출액은 용역매출액으로 기재되므로 응답자에게 임대매장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수수료가 아닌 판매액을 기재할 것을 요청

- 잠정자료는 반드시 사업체에 문의한 후 작성

- 분기결산 등으로 입력마감(20일)까지 자료입수가 어려운 경우 사업체의 경영실태(전월대비 증감폭 등)를 문의하여 작성

- ☞ 입력마감일후 서비스업동향과 자료 확정일(22일)까지 확정자료를 입수한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에 통보후 수정입력 가능

- 지방청(사무소)에서는 매월 잠정치로만 조사되는 사업체의 명단을 작성하여 특별 관리(분기, 집계지연 등)
- 조사표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조사하며, 응답거부 또는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기재하거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됨

#### 다. 조사표 작성후

- 조사내용 검토 철저
  - 조사기록부를 이용하여 전월 및 전년동월 수준 등을 분석하고 증감폭이 큰 ( $\pm 20\%$  이상) 경우 영업일수 등 조사변동내용 등을 검토하고 응답자에 문의 하여 사유 파악 및 기록
- 입력프로그램에 정확한 입력 및 증감사유 기재
  - 단위착오 등으로 판매액 및 재고액이 과대 및 과소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 2. 조사 대상

### 가. 대상업종

####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45 ~ 47)

- 도소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
-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산업 등은 제외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461	상품중개업
468	기타도매업
4786	중고품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2) 도소매업과 타산업과의 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지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본사는 도매업으로 분류  
-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관리 지사 및 본사 등은 제외
- 건설업중 보일러공사업(가정용 보일러 설치), 실내장식공사업(도배 및 장판 부착), 유리공사업(샤시설치), 조명공사업(조명장치설치)이 도소매업으로 분류 되지 않도록 유의

#### (3) 겸업처리

- 도소매업과 타산업(제조, 건설, 운송, 서비스 등)을 겸업하는 경우 도소매업 부문 부가가치가 큰 경우만 조사대상

-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도소매업 겸업사업체는 상품판매액만 조사하고, 기타 매출은 조사에서 제외

#### (4)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

- 도매업은 취급상품을 불문하고 구입한 상품을 일반 소비자가 아닌 도매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단체 등에 주로 판매하며, 상품이 일반적으로 진열 되지 않음
- 소매업은 산업용품이 아닌 소비재를 일반 소비자에게 주로 판매하며,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진열됨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은 조사 편의상 자동차판매업(451)은 소매업으로 조사하고, 자동차부품판매업(452), 모터사이클판매업(453)은 도매업으로 조사
-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하는 경우 판매액 비중이 큰 업종으로 분류  
예) 소매매출이 8백만원, 도매매출이 2백만원인 경우 소매업의 상품판매액에 천만원을 기입

#### (5) 대표업종과 산업분류

- 표본추출, 사업체관리, 모집단추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유사한 산업 분류를 묶은 대표업종을 선정(산업분류 포괄범위는 부록2 참고)
  - 대표업종을 기준으로 사업체대체, 자료처리 및 공표
- 도매업은 대표업종 16개로 구성
  - GA20, GB20~GB72
- 소매업은 대표업종 27개로 구성
  - GA10, GC111-GC92

## 나. 대상 사업체

### (1) 표본으로 선정한 4,000여개 사업체

#### ※ 2005년기준 표본추출개요

- 모집단 :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정비 결과(828,048개)
  - 표본추출방법 : 응용절사법(종사지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체는 모두 표본으로 선정하고, 종사지수가 적은 사업체는 표본추출)
  - 표본수 : 약 4,000개
  - 표본보완 : 매년 실시되는 전국사업체조사 및 도소매업조사를 전수층 보완 및 사업체대체 명부로 활용
- 출입이 특정인에게 제한되는 곳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입장료를 내는 시설(영화관, 운동장, 기차역내, 고궁, 군병원, 관공서, 학교, 회사 등)의 구내매점, 공항 면세점
    -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영하는 상점
- ### (2) 조사단위
- 사업체(매장, 점포)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본사조사의 경우 기업단위 조사
    - 장소, 대표자, 회계장부가 각각 다른 경우 다른 사업체로 처리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은 한 장소에 다수의 매장을 갖고 있으나, 매장별로 회계가 독립되지 않으므로 한 사업체로 조사

## (3) 전수층과 표본층

○ 조사대상 사업체는 종사자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구분되는데, 전수층은 해당 사업체만 대표하고(승수1), 표본층은 표본에 뽑히지 않은 사업체도 대표(승수가 큼)하므로, 사업체 변동시 처리방법이 상이

- 전수층 : 사업체 일련번호 첫 자리가 1, 2, 3, 9

· 1 ~ : 백화점, 대형마트

· 2 ~ : 종사자수 50인 이상(무점포판매업 100인 이상), 매장면적 3,000m<sup>2</sup> 이상인 대형전문점, 업종평균매출액의 100배이상

· 3 ~ : 표본조사업종중 종사자수가 절사점이상, 연간보정시 신규사업체

· 9 ~ : 본사조사(자동차신품 판매업, 체인화편의점 등)

- 표본층 : 사업체 일련번호 첫 자리가 4, 5, 6

○ 전수조사업종은 해당업종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며, 전수층으로 구성

- 백화점(GC111), 대형마트(GC119), 체인화편의점(GC122), 자동차신품판매업(GA10의 일부)

- 표본조사업종은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구성

○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업종

자료출처	입수자료	업종범위
수입자동차협회	수입자동차 판매액	GA10의 일부
한국석유공사	차량 및 가정 연료 판매량	GC71, GC72

#### (4) 대형소매점 매장 및 거래 유형

- 대형소매점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취급상품 및 브랜드에 따라 매장유형 및 거래방법을 다양화

매장유형	거래유형	정의
직영매장	하도급거래 (제조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소매점이 특별한 규격, 디자인 등을 정하여 납품업자에게 제조위탁(PB상품 등)</li> <li>- 상품의 판매, 재고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인 대형소매점에 있음</li> </ul>
"	직매입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소매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 재고반품이 어려움</li> <li>- 상품의 판매, 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대형소매점이 짐</li> </ul>
특정매입 매장	특정매입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소매점이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며, 재고반품이 자유로움(판매점원은 납품업체 직원)</li> <li>- 상품의 판매, 재고 관리는 납품업자가 하나, 회계상 대형소매점내의 상품은 대형소매점이 구입(특정매입원가)한 것으로 처리</li> </ul>
"	판매분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소매점내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소유권이 납품업체에서 대형소매점으로 이전</li> <li>- 상품의 재고가 특정매입거래와 달리 대형소매점에 전혀 없음</li> </ul>
임대매장	임대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업체가 가격결정, 재고관리 등 점포운영의 책임을 지고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을 대형소매점에 지급(명품매장 등)</li> <li>- 대형소매점은 판매대금을 통합관리하고 일정기간내에 임대료(판매액의 일정비율)를 제외한 판매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줌</li> </ul>
임대갑 매장	임대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인이 정액임대료를 매월 대형소매점에 지급</li> <li>- 대형소매점에서 완전 독립한 형태</li> </ul>

### 3. 조사표 작성방법

#### 가. 관리항목(통계청에서 기입)

사업체명											
※행정구역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담당자ID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 사업체명

- 간판에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간판에 있는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을 비고란에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기입하며, 지사인 경우 지사까지 기입  
(예: 샘머리 둔산점 → 샘머리자동차(주) 둔산지점)

##### ○ 행정구역 분류부호

- 최근의 「행정구역분류부호표」를 참조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코드 7자리까지 기입

##### ○ 산업분류

- 사업체의 주된 산업분류 부호를 세세분류(5자리)까지 기입
- 사업체의 산업분류 변경은 사업체관리 요령을 참조하여 처리

##### ○ 사업체 일련번호 : ①②③④⑤⑥

- 앞의 4자리는 사업체 명부상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뒤의 2자리는 표본 사업체가 유고로 대체될 때마다 -00, -01, -02...로 수정하여 관리

##### ○ 사업체 고유번호 : 모집단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지방에서 부여하지 않음

##### ○ 담당자 ID : 조사담당직원의 ID를 정확하게 기입

## 나. 조사항목

### ① 월간 영업일수

2 5 일

- 조사 해당월 중 실제로 영업한 일수 기입
  -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영업을 하였더라도 일수에 포함
- 사업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매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일수 증감사항은 반드시 「비고」란에 기입
- 무점포 소매업 중 통신 판매업(4791)은 해당 사이트 혹은 전화가 운영되지 못한 경우에만 영업일수에서 제외

### ② 월말 종사자수

1 0 명

- 매월 말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
  - 본사조사시 지사 종사자수까지 포함하여 작성
  -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사자를 합하여 기입하되,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파견근로자, 용역직원)는 종사자수에서 제외

####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③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④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무보수로 사업체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한 자 ※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분류
⑤ 기타종사자	- 일정한 급여없이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자 (예) 카딜러, 방문판매원 등

## - 종사자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 월평균 정상근무일수의 1/3미만 업무에 종사한 자
-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군복무자, 하청업체 종사자
-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특정매입매장, 임대매장에서 일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도급계약(용역)에 의해 파견 받은 자

③ 매장면적 

3	2	5	0
---	---	---	---

 m<sup>2</sup>

- 소매업(지동차판매업 제외)에 해당되는 사업체만 작성하되, 조사단위는 m<sup>2</sup> 이므로 평으로 조사될 경우 1평 = 3.3m<sup>2</sup>로 환산
- 사업체가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임차한 면적은 포함하지만 다른 업체에 임대해 준 면적은 제외
  - 조사대상 = 직영매장 + 특정매입매장 + 임차매장
- 포함되는 경우 : 상품판매를 위한 진열장, 벽이 없는 연결통로 등
- 제외되는 경우 : 식당, 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화장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 주차장, 상품반입장, 종업원 이용시설, 소비자 편의시설 등

## ④ 월간 상품판매액(부가가치세액 제외)

- 사업체의 주된 산업분류에 따라 도매업은 ④-1 도매업만 기입하고, 소매업은 ④-2 소매업의 상품 판매액(직영+특정매입+임대율)을 17개 상품군별로 기입하고, '임대율매장이 있는 경우 임대율판매액을 제외한 상품판매액합계'를 기입



## ※ 대형 소매점의 매장유형별 판매액 및 재고액 조사요령

매장유형	조사범위
직영	- 결산서 : 판매액, 재고 모두 대형소매점에 포함 ⇒ 판매액, 재고액 모두 대형소매점에 포함조사
특정매입	- 결산서 : 판매액은 대형소매점의 총매출액, 매입한 상품은 특정매입원가, 재고액은 기말상품재고액에 포함 ⇒ 판매액, 재고액 모두 대형소매점에 포함조사
임대율	- 결산서 : 판매액, 재고액 모두 입점업체의 결산서에 포함, 임대료는 대형소매점의 용역매출로 포함 ⇒ 판매액은 대형소매점에 포함조사, 재고액은 제외
임대갑	- 결산서 : 판매액, 재고액 모두 입점업체의 결산서에 포함, 임대료는 대형소매점의 결산서에 용역매출로 포함 ⇒ 대형소매점에서 제외

## 〈 사업체유형별 판매액 처리요령 〉

## ① 분기별 결산업체의 판매액 처리

- 조사 마감일까지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사업체의 판매액을 경영실태 등을 반영하여 잠정치로 조사
- 잠정치 조사도 어려운 경우 지난 3개월 월평균판매액 또는 전분기 판매액을 3으로 나눈 값을 입력
- 분기자료를 입수하면 3으로 나누어 월별로 균등하게 입력

## ② 자료수집 지연 사업체의 판매액 처리

- 조사 마감일까지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사업체의 판매액을 경영실태 등을 반영하여 잠정치로 조사
- 잠정치 조사도 어려운 경우 전월자료를 참고하여 보합처리하고 익월에 확정치 조사

## ③ 점업체의 판매액 처리

- 주된 산업분류가 도소매업인 경우 상품판매액만 분리하여 조사
- 연료소매는 행정자료를 통해 전체판매액을 파악하므로, 대형마트 등의 주유소 판매액은 제외하여 조사

## ④ 반품액 처리

- 분기 혹은 반기 결산시 반품이 들어올 경우 당월에 반품액을 전부 차감 처리하지 말고 해당 기간에 걸쳐 차감

## 5 월말상품재고액

상품재고액  판매가(재고 평가방법이 판매가 기준이면 √ 표시)

- 모든 사업체가 기입하되, 소매업체는 직영 및 특정매입 매장분만 기입
- 상품 재고액은 월말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또는 창고(자사 또는 타사)에 보관 중인 상품의 장부상 총액을 구입원가 기준으로 기입
- 제조업 본사는 공장에 보유 중인 재고(생산자 제품 재고)가 아닌 본사, 영업소, 매장, 지사, 물류창고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만 파악
- 월말 재고액 = 전월말 재고액 + 월간 구입액 - 월간판매액 ± 과부족
  - 과부족이 과다(전체 재고액의 ±10% 이상)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
- 사업체의 재고액 평가방법은 구입원가가 원칙이나, 매장에서 판매가로만 조사될 경우 판매가에 체크표시한 후 기입
  - 구입원가 결정방법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많이 사용되나, 사업체의 회계기준에 따름
    - .. 이동평균법 : 상품의 구입시기가 각각 다를 경우 매입때마다 다른 단가로 가중평균
    - .. 총평균법 : (기초재고액 + 기간중 구입 재고액)/총수량

## 6 비고(상품판매액 증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이사항 등)

- 판매액의 증감 폭이 전월, 전년동월에 비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반드시 기입
  - 월 매출액이 400만원 이하인 사업체는 판매액 증감사유를 반드시 기입할 필요는 없으나 기입이 바람직
- 규모가 큰 본사 및 전수조사 사업체에 대해서는 항상 판매동향을 파악하여 증감률이 ±20% 미만이라도 증감사유 작성
  - (예) 정기세일(12월10일 ~ 12월25일) 실시; 파업으로 휴업(10월8일 ~ 10월12일)

- 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사유를 '성수기로 증가', '비수기로 감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
- 전월 실적을 잠정처리한 경우 사유 반드시 기입
- 상품군 변동 등 사업체 특이사항 기입

#### 다. 조사기록부 작성요령

- 사업체를 처음 조사할 때는 조사표를 사용하고, 그 이후는 조사기록부를 이용하여 내용검토를 충실히 할 수 있음
- 사업체가 대체될 경우 기존 사업체의 조사기록부를 대체사업체의 조사기록부 뒤에 편철하여 조사의 연속성을 도모
- 사업체 구분
  - 단독 사업체는 1기업1사업체로서 기업내에 다른 사업체가 없음
  - 지사는 기업활동을 총괄하는 본사가 별도로 있으며, 기업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면 제조업 지사, 비제조업이면 비제조업 지사로 기입
  - 본사는 1기업다사업체를 총괄하는 사업체로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지사수를 기입
- 판매액 및 재고액 증감분석이 가능토록 작성
  - 판매액 및 재고액 전년자료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비를 계산하고, 사업체의 특이사항(할인행사, 매장확장 및 축소, 수주증가 등)을 매월 기록하여 분석자료로 활용
- 연간통계와 비교가능토록 연간매출액(결산서기준) 항목을 소매업 조사기록부에 신설

- 매년 6월조사시 소매업체의 전년매출액을 결산서에 근거하여 조사
  - 상품매출액 : 직영매장 및 특정매입(매장)의 판매액
  - 용역 및 기타매출액 : 임대매장 수수료, 식당매출액 등 서비스 매출액
  - 매출차감 : 특정매입(매장)의 상품구입액, 예누리 등
  - 기말상품재고액 : 직영매장 및 특정매입(매장)의 재고액



## 4. 사업체 관리 요령

### 가. 관리 목적

- 조사대상 사업체의 변동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규조사 및 사업체 대체 등의 관리를 통해 조사자료 및 작성통계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 〈사업체변동 유형〉

변동내용	부호	변동내역 정의	조사여부
전입	01	현 지방청(사무소)이 관할하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이전	계속조사
전출	02	현 지방청(사무소)이 관할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	조사중지
신규	03	기존 사업체명부에 새롭게 추가된 전수층 사업체	(전)신규조사
명칭변경	04	사업체 명칭만 변경	계속조사
사업체 대체	05	폐업, 대상외, 소재불명, 응답불응 등으로 표본층의 사업체를 대체한 경우	(표)대체조사
포괄범위 내 변경	06	대표업종의 포괄산업분류내에서 산업분류변경	계속조사
규모변경	07	조사대상사업체가 합병, 분할, 이전, 매장확장 등으로 동월비가 전년보다 20%이상 증감한 경우	계속조사
상품군 변동	09	소매업 사업체의 기존 조사 상품군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상품군이 조사될 경우	계속조사
폐업	13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휴업	(전) 조사중지 (표)대체조사
기타	14	대상외 : 대표업종의 포괄산업분류를 벗어난 산업분류변경 소재불명 : 현 소재지를 떠났으나 이전위치를 몰라 조사 불가능	상동
응답불응	15	응답불응으로 조사가 불가능	상동

\* (전)은 전수층, (표)는 표본층

## 나. 변동유형별 사업체 관리방법

### (1) 유의사항

- 사업체변동 처리방법이 전수층과 표본층이 각기 다름
- 변동사항을 조사여부에 따라 계속조사, 신규조사, 조사중지, 사업체대체 등으로 구분 가능
- 변동사항중 제일많이 발생하는 사업체대체 처리절차를 숙지
  - 사업체 변동코드 13, 14, 15인 경우 표본층은 사업체 대체를 하고, 전수층은 조사중지
- 도소매업은 사업체유고(변동코드 13, 14, 15)에 따른 사업체 대체(05)가 주로 발생하고 변동부호 06, 07은 거의 없음
- 휴업은 변동코드가 없으며, 판매액은 '0'으로 처리하고, 사업체 특이사항란에 '○년○월부터 휴업'으로 기재하고, 3개월이상 휴업시는 폐업처리
- 기존 사업체를 다른 사업체가 인수한 경우 대표업종이 동일한 경우 폐업처리 하지 않고 계속조사하며,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명칭변경(04)

### (2) 전입(01) 및 전출(02)

- 지방청(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전입·전출은 변동사항이 아니나, 판매액 규모가 크게 달라진 경우 규모변경(07)으로 처리하고 계속 조사
- 지방청(사무소) 관할구역 외로 전출할 경우, 전출 소재지 지방청(사무소)은 전입 소재지의 지방청(사무소)과 서비스업동향과에 통보
- 전출사업체의 기존 조사담당자는 조사기록부 등 사업체자료를 인계한 후에 전출 사업체의 조사가 단절없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 영세업체로 진출 지역을 모를 경우 기타(14)로 처리하고 진출 소재지 지방청(사무소)에서 사업체 대체

### (3) 신규(03)

- 기존 사업체 명부에 새롭게 추가된 전수층 사업체
  - 대형마트, 백화점은 신설 즉시 신규처리
  - 연간보정시 사업체조사 및 도소매업조사를 기초로 추가된 신규 사업체명부는 산업분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후 처리

### (4) 명칭 변경(04)

- 사업체명칭이 변경된 경우 수정후 계속조사
- 종사자수, 매장면적, 응답자 등이 바뀐 경우는 변동처리하지 않고 조사표 및 기록부의 내용만 변경시킴

### (5) 사업체 대체(05)

- 폐업(13), 대상외(14), 소재불명(14), 응답불응(15) 등으로 표본층의 기존 사업체를 새로운 사업체로 대체(다. 사업체대체절차 참고)
- 대체사업체가 산업분류, 판매액(전월, 금월, 연간), 상품군구성(소매업에 한정)이 기존 사업체와 유사한지 반드시 확인

### (6) 포괄범위내 변경(06)

- 산업분류변경이 대표업종의 포괄범위내인 경우로 계속조사
- 소매업의 경우 상품군구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

**(7) 규모변경(07)**

- 조사대상사업체가 합병, 분할, 이전, 매장확장 등으로 동월비가 전년보다 20%이상 증감한 경우 변동처리하고 계속조사
- 흡수된 사업체는 폐업처리(13)하고 표본층의 경우 사업체 대체
- 규모가 크게 변동되어 표본층을 전수층으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에서 처리

**(8) 상품군변동(09)**

- 소매업 사업체의 기존 조사 상품군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상품군이 조사될 경우 변동처리하고 계속조사

**(9) 폐업(13)**

-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3개월이상 장기휴업한 경우로 폐업한 날이 속한 익월 부터 조사중지
- 전수층은 조사중지, 표본층은 다른 사업체로 대체

**(10) 기타(14)**

- 대표업종의 포괄산업분류를 벗어난 산업분류변경(대상외)과 현 소재지를 떠났으나 이전위치를 몰라 조사 불가능(소재불명)한 경우 등
- 전수층은 조사중지, 표본층은 다른 사업체로 대체

**(11) 응답불응(15)**

- 응답 불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 후 대체
- 전수층은 조사중지, 표본층은 다른 사업체로 대체

## 다. 사업체 대체 절차

- 표본층 사업체가 폐업(13), 대상외(14), 소재불명(14), 응답불응(15)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다른 사업체로 대체 조사
  - ① 유고사업체의 일련번호로 표본층인지 확인
    - 사업체 일련번호 첫 자리가 4,5,6이면 표본층으로 다른 사업체로 대체하며, 1, 2, 3, 9는 전수층으로 조사중지
  - ② 대체명부에서 유고사업체와 산업분류가 동일하고, 판매액(연간판매액을 12로 나눠 월평균 계산) 및 종사자수가 비슷한 사업체 선정
  - ③ 선정된 사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최근 3개월 판매액 자료 및 상품군(소매업 한정)을 조사하고 유고사업체와 유사한 경우 대체후보사업체로 선정
    - 관할 지방청(사무소)에서 적정 사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광역지방청에 통보하여 다른 사무소에서 사업체 선정토록 함
  - ④ 서비스업동향과와 사전 협의후 대체 사업체의 승인 요청
    - 서비스업동향조사시스템 도소매부문 [2-6 대체사업체 확정]을 이용하여 대체 사업체의 승인을 매월15일까지 요청
      - 승인요청시 전월, 금월, 월평균금액을 파악하여 입력
  - ⑤ 승인완료후 즉시 조사
    - 금월치 자료는 승인요청전(③번)에 가능한 파악토록 하되, 15일이후 조사 결과가 입수되는 경우 20일까지 입력가능
      - 20일까지 입력을 못할 경우 유고사업체를 금월 보합처리하고, 익월부터 대체사업체를 조사

## II

## 소매판매액통계 작성 개요

## 1. 의의

- 소매판매액통계는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로서 상품군별, 소매업태별, 16개 시·도별(대형소매점에 한정) 등으로 구분·작성

## 2. 연혁

- 1997년 : 『영업형태별지수』, 『소비재지수』를 개발하여 1995년부터 소급작성하고, 『16개 시·도별 대형소매점판매액 지수』는 1997년부터 작성(도소매판매액지수내 지표로 작성)
- 2003년 2월 : 2000년 기준 개편시 무점포소매업을 추가
- 2005년 3월 : 『소비재 상품군별 판매액 지수』(11종)를 분기별 공표
- 2008년 2월 : 도소매업동태조사가 서비스업동향조사에 통합
- 2008년 3월 : 『소매판매액통계』를 2005년부터 소급 작성

## 3. 대상 업종

-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매업(중분류 47)과 자동차 판매업(소분류451)중 승용차부문
  - 소매업중 중고품소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판매업, 그외 기타 무점포소매업은 제외

#### 4. 기초 자료

- 모집단 : 2005년기준 서비스업총조사 결과
- 표본구성
  - 전수조사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자동차 신품 판매업
  - 표본조사 업종 : 전수층(종사자수, 매출액이 절사점이상)과 표본층으로 구성
  - 행정자료이용 업종 : 수입자동차(수입자동차협회), 연료(한국석유공사)
- 표본수 : 약 4천개
-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가 직업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면접조사

#### 5. 작성 방법

- 판매액 : 전수층은 조사금액, 표본층은 조사금액에 업종별 승수를 곱하여 업태별, 상품군별 판매액을 작성
  - 업종별 승수는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결과를 기초로 산정
- 지수
  - 경상지수 : 업태 및 상품군별 판매액을 2005년 월평균 판매액(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작성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나누어 작성
  - 계절조정지수 : 불변지수를 X-12-ARIMA 방식을 적용(계절요인, 명절요인, 조업일수 요인을 제거)하여 작성

## 6 공표 항목 및 방법

### ○ 공표 항목

- 소비재(상품군) : 17개 조사상품군을 13개 공표상품군으로 재집계
  - 내 구 재(4개) :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및 통신기기, 가구
  - 준내구재(3개) : 의복, 신발 및 가방, 오락·취미 및 경기용품
  - 비내구재(5개) : 음식료품, 서적·문구용품, 차량용연료, 의약품, 화장품·비누
  - 기 타 상 품 : 재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품
- 소매업태(10개 분류)
  - 점포판매(7개) :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기타종합소매점 포함), 편의점, 전문상품소매점(가전·컴퓨터·통신기기 소매점, 문화상품소매점을 세분)
  - 무점포판매(3개) : 사이버쇼핑, 기타무점포판매(홈쇼핑 세분)
- 16개 시도별 대형소매점(3개) : 대형소매점, 백화점, 대형마트

### ○ 공표 방법

- 국가통계포털(KOSIS)에 매월말 수록
- 『소매판매액통계』를 지수화한 『소비재판매액지수』(불변지수, 계절조정지수)를 산업활동동향에 다른 지표와 같이 수록하여 매월말 보도자료로 발표
- 디지털간행물로 제작하여 수록

III

도소매업관련 부록

1. 조사지침 관련 사례
2. 대표업종별 포괄산업분류
3. 상품분류 기준
4. 사업체변동 전산처리방법
5. 도소매업부문 조사표(양식)

## 1. 조사지침 관련 사례

### A. 사업체 관리

#### <사업체 대체>

1) 도소매업 사업체 대체시 고려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산업분류가 동일하고, 판매액 및 종사자수가 유사해야 합니다. 소매업의 경우 상품군 구성도 유사해야 합니다.

2) 도소매업 사업체 대체시 세세분류에 따른 대체사업체 찾기가 어려운 경우, 해결방안은 없나요?

- 동일한 대표업종내의 다른 산업분류에 속한 판매액 및 상품군 구성이 유사한 사업체를 찾아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후 대체합니다.

3) 서비스업동향조사 시스템(도소매업부문)에서 사업체 대체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부록4의 사업체변동 전산처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고코드>

4) 유고코드 중 [14. 기타]의 예를 들어주세요.

- 대표업종의 포괄산업분류를 벗어난 산업분류변경(대상외)과 현 소재지를 떠났으나 이전위치를 몰라 조사 불가능(소재불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5) 사업체 폐업, 휴업,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판매액은 어떻게 기입합니까?

- 폐업, 소재불명은 사업체 대체를 하고, 휴업은 2개월까지는 0으로 처리하고 3개월째 폐업처리 및 사업체를 대체합니다.

6) 사업체 대체시 유고번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폐업(13), 대상외(14), 소재불명(14), 응답불응(15)이 발생했을때 표본층의 기존 사업체를 새로운 사업체로 대체하고, 전수층은 조사중지합니다.

### < 기타 사업체관리 >

7) 사업체 변동에 대한 변동보고서를 본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까?

- 별도로 변동보고서를 통보하고 있지 않으며, 시스템에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8) 사업체 전·출입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 사업체가 진출, 전입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청간 인수인계가 철저해야 합니다. 따로 본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지만 시스템상의 변동보고서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전에는 A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에서 영업의 변화에 따라 B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 상품군 변동으로 사업체의 산업분류가 대표업종을 벗어날 경우 사업체를 대체합니다. 대표업종내일 경우 변동처리하고 계속조사합니다.

10) 누락사업체 발견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누락사업체는 전수업종인 대형소매점에만 발생합니다. 누락사업체는 발견 즉시 신규로 조사합니다. 2개월 이전자료는 연간보정시 반영합니다.

## B. 조사항목

### < 상품판매액 >

11) 도소매업 사업체의 판매액에는 상품판매액 뿐만 아니라 기타 서비스 매출액도 포함되는지요?

- 도소매업 월간조사에서는 상품판매액만 조사하고 서비스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연간조사는 결산서기준이므로 서비스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12) 도소매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음식, 수리, 택배, 예약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3) 상품판매액, 매출액, 결산서 매출액 등의 차이점은?

- 상품판매액 : 직영매장상품매출액+수수료매장의 상품매출액
- 매출액 : 직영매장상품매출액+수수료매장의 수수료+기타 매출액(서비스매출액, 제조매출액 등)
- 결산서 매출액 : 매출액을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한 금액

14) 컴퓨터 및 통신기기 판매 사업체일 경우에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까지 혼합되어 조사되고 있는데 조사방법은 무엇입니까?

-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업종을 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신기기(핸드폰) 대리점은 소매업체로 분류합니다. 소매업체로 조사시 수리판매액은 제외하며, 상품도매는 소매업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 〈 월말 상품재고액 〉

15) 월단위 재고액 파악이 힘듭니다. 꼭 조사해야 하나요?

- 월단위 조사가 원칙입니다. 월단위 파악이 힘들 경우 분기기준으로 조사하고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합니다.

16) 재고액 조사시 구입원가로 조사해야 하나 사업체 시스템상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판매가로 조사 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판매가로 조사하시고,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구입원가비율을 파악할 수 있으면 매출가 × 구입원가비율로 계산하여 구입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7) 구입원가, 매출원가, 판매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구입원가와 판매가는 재고평가방법의 종류입니다. 구입원가기준은 재고를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판매가기준은 재고를 현재판매가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판매가기준으로 계산된 재고액이 구입원가기준보다 일반적으로 10~40% 많습니다. 매출원가는 판매상품의 구입원가를 계산(구입상품액+기말재고액-기초재고액)한 것으로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을 계산하는데 활용됩니다.

18) 재고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사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소매부문 상품으로 사업체내 창고, 물류창고(자사 또는 타사), 대형소매점 매장 등에 있는 것을 포함하나, 제조공장의 창고에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 〈 겸업처리 〉

19) 도소매업의 다른 업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주된 활동의 업종으로 조사하며, 다른 업종의 판매액도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예를들어 소매업체가 일부 도매활동을 겸할 경우 도매 판매액을 소매판매액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 20) 도소매업이외의 타산업과 겸업인 경우는?

- 도소매업이 주된 산업인 경우 조사대상이며, 상품판매액만 조사하고 기타 매출액은 제외합니다.

## 21) 건설업과 겸업시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 벽지도배, 장판부착, 보일러 설치 등 판매와 공사가 결합되는 경우, 상품판매액만을 조사합니다.

## < 대형소매점 매장구분 >

### 22) 직영매장과 특정매입매장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 직영매장은 대형소매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자기직원이 판매하며,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하자가 없는 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특정매입매장은 대형소매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는 납품업자가 하고, 재고 반품이 하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회계기준상 특정매입매장의 구입액(특정매입원가)과 판매액(총매출액에 포함)을 대형소매점 결산서에 표시하고, 총매출액에 특정매입원가를 제외한 매출액을 별도 표기합니다. 이 기준은 사이버쇼핑몰, 홈쇼핑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사업체는 특정매입원가와 총매출액을 표기하지 않고, 매출액만 기재하기도 합니다.

### 23) 특정매입매장의 재고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특정매입매장 재고는 대형소매점이 납품업자에게 구입한 상품을 팔다 남은 것입니다. 회계상 특정매입매장 재고는 대형소매점에 속한 것이므로, 대형

소매점 재고로 조사합니다. 다만, 특정매입매장 재고는 반품이 자유로우므로 직영매장 재고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납니다.

#### 24) 특정매입과 판매분매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특정매입은 대형소매점이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므로, 일반적으로 재고가 발생합니다. 판매분 매입은 대형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대형소매점이 그 물건을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하는 형태이므로, 재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25) 특정매입매장과 임대매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두 매장 모두 수수료 매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매입매장은 대형소매점이 상품을 구입하고(보통 외상구매), 판매 완료후 납품업체에게 상품구입액을 돌려줍니다. 임대매장은 입점업체가 임차료를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로 냅니다. 대형소매점은 임차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임대매장의 판매대금을 통합관리하고, 판매완료후 일정기간내에 수수료(즉 임차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점업체에게 돌려줍니다. 임대매장의 판매액은 대형소매점의 결산서에 포함되지않고, 수수료만 용역매출에 포함됩니다. 특정매입매장의 판매액은 대형소매점의 총매출액에 포함되며, 구입액은 특정매입원가로 표시됩니다.

#### 26) 임대매장의 판매액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 상품별 조사항은 임대매장 판매액을 조사하고, '임대매장이 있는 경우 임대 판매액을 제외한 상품판매액 합계'에는 제외하여 직영매장과 특정매입매장의 판매액 합계만 조사합니다.

#### 27) 임대매장의 재고는 조사합니까?

- 대형소매점에 임대매장의 재고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 28) 임대율매장과 임대갑매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임대율매장은 입점업체가 임차료를 상품판매액의 비율만큼 제공하나, 임대갑매장은 입점업체가 상품판매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정액을 임차료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백화점은 임대갑매장의 상품판매액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임대갑매장의 상품판매액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 < 영세사업체 조사 >

### 29) 영세사업체의 상품군별 조사가 어려운 경우 해결방안은?

- 영세사업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고, 고객수, 상품구입비 등 다양한 간접추정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규모이하인 영세사업체는 연간보정시 조사중지하고, 새로운 사업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30) 영세사업체 증감사유란 기입시 금액 및 증감률( $\pm 20\%$ ) 조정 해 주세요.

- 영세사업체 금월 판매액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감사유( $\pm 20\%$ )란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매장면적 >

### 31) 매장면적 조사시 포함하는 매장면적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직영매장, 특정매입매장, 임차매장은 포함되나, 임대매장은 제외합니다.

### 32) 창고도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

- 창고는 매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장면적은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포함합니다.

- 매장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식당, 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화장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 주차장, 상품반입장, 종업원 이용시설, 소비자편익시설 등이 있습니다.

33)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 직영매장(수수료매장 포함) 면적이 3,000㎡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형소매점 허가가 유지되는 경우 계속 조사합니다.

#### < 기타 >

34) 상품군별로 작성하기가 애매한 상품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부록의 상품군 분류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십시오. 그래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경우 서비스업동향과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5) 조사하고 있는 사업체 중 하루에 1시간(일부분, 일정시간) 영업을 했다면 영업일수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영업활동을 했다면 영업일수에 포함합니다.

36) 2개월이 지난 후에 확정자료가 들어왔을 경우 입력가능한가요?

- 당장 입력은 불가능하지만 조사기록부에 기록하여 연간보정시 반영합니다.

37) 종사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매월말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종사자수를 기입하며, 타사업에서 받은 종사자(파견근로자, 용역직원, 판매점원)는 제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대표업종별 포괄산업분류

대표업종	업종명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GA10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신제품판매업은 본사조사 대상 ○ 중고차는 수수료가 아닌 외형대출액 조사	45110	자동차 신제품 판매업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GA20	자동차부품 및 이륜차판매업 ○ 수리관련 사업체는 제외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9	기타 자동차신제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GB20	산업용농축산물 및 산동물도매업 ○ 농축산물 가공품, 수산물은 GB31	46201	곡물 도매업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46203	사료 도매업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46205	산동물 도매업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GB31	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46312	육류 도매업
		46313	수산물 도매업
		46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3	빵 및 과자 도매업
		46324	낙농품 도매업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GB32	음료 도매업 ○ 우유, 요구르트, 차류(티백)는 GB31	46331	주류 도매업
		46332	비알콜음료 도매업
GB41	가정용섬유제품, 의복 및 신발도매업 ○ 전기담요(GB42) ○ 등산화(GB46) ○ 직물벽지(GB60) ○ 원사, 직물(GB72)	46411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46415	내의 도매업
		46416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46417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도매업
		4641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46420	신발 도매업

대표업종	업종명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GB42	가정용기기, 가정용가구 및 악기도매업 ○ 가전제품, 사무용가구(GB52) ○ 의료용가구(GB53) ○ 수공구, 보일러(GB60)	46431	가정용 가구 도매업
		46432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46433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46439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46461	음반 및 비디오품 도매업
		46462	악기 도매업
GB43	의약품 도매업 ○ 의료장비(GB53)	46441	의약품 도매업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GB44	화장품 및 비누 도매업	46443	화장품 도매업
		46444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GB45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 ○ 장판지, 벽지(GB60) ○ 판지상자, 골판지, 펄프(GB72)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46452	문구용품 도매업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GB46	오락,취미,경기용품 및 기타가정용품 도매업 ○ 가정용 캠코더(GB52)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4649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46499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GB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도매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22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GB52	사무용품 및 가전제품 도매업	46521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4659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4659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GB53	산업용기계장비 도매업 ○ 정형외과용품(GB43) ○ 안경, 사진기(GB46)	4653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2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3	공작기계 도매업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46593	수송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9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GB60	건축자재 및 철물 도매업	466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466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466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466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46691	도료 도매업
		466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466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대표 업종	업종명	산업 분류	산업분류명
GB71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도매업 o 1차 금속제품을 가공한 판제품은 GB53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GB72	기타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46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31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4673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46741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46742	직물 도매업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46799	그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GC111	백화점 o 전수업종	47111	백화점
GC119	기타대형종합소매업 o 전수업종 o 3000㎡ 이상 전문점은 취급상품에 따라 해당 업종에 분류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GC121	슈퍼마켓	47121	슈퍼마켓
GC122	체인화 편의점 o 분사조사(8대 편의점)	47122	체인화 편의점
GC129	기타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 o 구멍가게(165㎡ 미만) o 만물상(3000㎡ 미만)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190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GC211	식료품 소매업 o 과일 및 채소 가공식품(GC213) o 애완동물 동물 사료(GC84)	47211	곡물 소매업
		47212	육류 소매업
		47214	과일 및 채소 소매업
GC212	수산물 소매업	47213	수산물 소매업
GC213	가공식품 소매업	47215	빵 및 과자류 소매업
		47216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GC214	담배 소매업	47222	담배 소매업
GC31	가전제품 소매업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GC32	컴퓨터 및 통신기기 소매업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GC41	가정용직물 및 의복소매업	4741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7412	한복 소매업
		47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47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47415	내의 소매업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47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대표업종	업종명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GC42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가죽 장갑, 벨트(GC41) ○ 등산화(GC62)	47420	신발 소매업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GC51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소매업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47512	기계공구 소매업
		47513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47519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GC52	가구 소매업	47520	가구 소매업
GC53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기타가정용품 소매업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592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47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GC61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4761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7612	문구용품 소매업
GC62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소매업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GC71	차량용연료 판매업 ○ 행정자료(한국석유공사) 이용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GC72	가정용연료 판매업 ○ 행정자료(한국석유공사) 이용	47721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47722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47723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GC8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약국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보조금액을 매출액에 포함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GC82	화장품 및 비누 소매업	47813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GC83	귀금속 및 사무용기기 소매업	47593	악기 소매업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47822	안경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GC84	화초 및 기타선물용품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4785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GC91	전자상거래판매업 ○ 거래액기준으로 조사	47911	전자상거래업
GC92	기타무점포판매업 ○ 홈쇼핑의 경우 거래액기준 조사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991	자동판매기 운영업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 판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3. 상품분류 기준

#### 가. 내구재 :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주로 고가의 상품

상품분류	조 사 범 위	관련업종
11. 가전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열기기 :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믹서,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전기식 이미용기구, 전기히터, 전기모포 등</li> <li>○ 영상,음향기기 : TV, VTR, DVD,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위성안테나, 오디오, 녹음기, MP3, 노래방기기 등</li> <li>○ 기타 : 정수기,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li> </ul>	47320
12. 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폰, 카폰, 전화기, 내비게이터(GPS), 무전기, 팩시밀리 등</li> </ul>	47312
13.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바코드리더기, 소프트웨어 등</li> </ul>	47311
14.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롱, 장식장, 침대, 의자, 식탁, 화장대, 사무용 가구 등</li> </ul>	47520
15. 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차, RV, CDV, SUV 등(중고 승용차 포함)</li> </ul>	451*
16. 상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 트럭, 특장차 등(중고상용차 포함)</li> </ul>	451*
1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기기 : 석유난로, 보일러</li> <li>○ 기계공구, 전동드릴</li> <li>○ 전기용품, 조명장치, 전기스탠드</li> <li>○ 악기 : 피아노, 국악기</li> <li>○ 자전거, 휠체어</li> <li>○ 의료기기, 보청기, 혈압측정기</li> <li>○ 사무용기기: 전자복사기, 금전등록기, 팩시밀리</li> <li>○ 안경, 콘택트렌즈</li> <li>○ 사진기, 사진용품</li> <li>○ 정밀기기, 현미경, 망원경</li> <li>○ 시계, 귀금속, 금반지, 다이아반지</li> <li>○ 예술품, 골동품, 조각품</li> <li>○ 수석, 총포류</li> </ul>	<p>47511*</p> <p>47512</p> <p>47591</p> <p>47593</p> <p>47632</p> <p>47812</p> <p>47821</p> <p>47822</p> <p>47823</p> <p>47829</p> <p>47830</p> <p>47841</p> <p>47859</p>

나. 준내구재 :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나 주로 저가 상품

상품분류	조 사 범 위	관련업종
21. 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복 : 남녀용 정장, 속옷, 유아복, 캐주얼, 한복 등</li> <li>○ 의복액세서리 : 양말, 스타킹, 모자, 장갑, 넥타이, 머플러 등</li> <li>〈제외〉 직물제품(침구, 커튼, 카펫, 수건 등)은 29</li> </ul>	47412~6 47419
22.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두, 운동화, 슬리퍼 등</li> <li>〈제외〉 등산화는 24</li> </ul>	47420
23. 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방, 핸드백, 지갑, 배낭, 트렁크 등</li> </ul>	47430
24. 운동, 오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음악 등 각종 문화콘텐츠를 기록한 CD 및 테이프</li> <li>○ 운동용품, 경기용품, 헬스기구, 등산장비 등</li> <li>○ 게임용품, 낚시장비, 완구류, 인형 등</li> <li>〈제외〉 공CD는 34, 컴퓨터소프트웨어는 13</li> </ul>	47620 47631 47640
2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용 직물제품 : 침구류, 커튼, 카펫, 수건 등</li> <li>○ 철물류(망치, 톱, 드라이버 등), 열쇠</li> <li>○ 건축자재 : 페인트, 유리, 목재, 벽지, 장판</li> <li>○ 주방용품 : 밥솥, 칼, 식기, 용기류</li> <li>○ 건조대, 쓰레기통, 수세미, 우산</li> <li>○ 악세서리, 가발, 장식용품, 기념품</li> <li>○ 애완동물, 관상어</li> <li>〈제외〉 전기제품(전기밥솥, 전기장판 등)은 내구재</li> </ul>	47411 47511* 47513-9 47520 47599* 47842 47852*

다. 비내구재 : 주로 1년 미만 사용되는 상품

상품분류	조 사 범 위	관련업종
31. 음식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료품 : 곡물,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빵, 과자, 건강 보조식품 등</li> <li>○ 음료, 주류</li> </ul>	4721 47221
32.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 한약품, 가정용 살충제 등</li> <li>○ 반창고, 탈지면, 붕대 등 의료용품 포함</li> <li>〈제외〉 의료기기는 19</li> </ul>	47811
33.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 향수, 비누, 샴푸, 치약, 염색약 등</li> <li>〈제외〉 세제는 39</li> </ul>	47813
34. 서적,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적 : 교재, 잡지, 신문, 교과서, 학습용 테이프 등</li> <li>○ 문구 : 노트, 물감, 복사지, 공CD</li> </ul>	47611 47612
3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li> <li>○ 가정용 소모품 : 화장지, 고무장갑, 세제, 양초, 랩 등</li> <li>○ 화초, 꽃, 분재류, 관상수</li> <li>○ 애완동물 사료, 애완동물약품</li> </ul>	47222 47599* 47851 47852*

## 4. 사업체변동 전산처리방법

### 가. 신규사업체 입력

#### ① [2.1 사업체 관리]에서 [추가] 버튼을 누름

2.1 사업체관리

2009년 02월분

사업체검색

번호 사업체명

919700 수입자동차협회

919800 FMK(주)

919900 불보트럭코리아(주) 부품

920000 모나미(주) OAS사업부

920100 제이메스컨설팅(주)1차금속

920200 한국생협연대(사)중앙물류센터

920300 전자상거래업

990100 전자랜드21(주) 물류센터(본사)

990200 삼성 테스코 홀플러스(본사)

990300 LG하이로직스(본사)

990400 롯데마트 물류센터(본사)

990500 롯데쇼핑 물류센터

990600 (주)신세계이마트 대구물류센터

990700 이마트 여주 물류센터

990800 하이로지텍(하이마트 물류센터 본사)

990900 씨제이 홀쇼핑 물류센터

991000 삼성전자로직(본사)

991100 그랜드백화점 물류센터

991200 이마트 광주(경기도)물류센터

991300 이마트 시화 물류센터

991400 뉴코아 일죽 물류센터

991500 코스트로코리아

991600 미원일마을렛

991700 GS리테일 물류센터

991800 GS리테일 중부물류센터

조회된 자료수 : 4030

파일저장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종료

조회 화면입니다

관리자

2009년 03월 13일

조사년도 2009

조사월 02

사업체번호 999900

산업분류 45110 자동차 신상품 판매업

사무소 00 통계청

담당자 1 문철

사업체명 한국자동차

주소 11 서울 서울 특별시 종로구

판매액 응답자 부서 영업부 설명 응답자 전화 02-1234-5678

재고액 응답자 부서 영업부 설명 응답자 전화 02-1234-5678

유고코드 03 신규

유고년도 2009

유고월 02

URL

E-mail

업종분류 GA10

바로가기

해당부내기

#### ② 사업체관리 입력화면으로 전환 (산업분류부터 입력)

2.1 사업체관리

2009년 02월분

사업체검색

번호 사업체명

917900 마가월드(주)

918000 한국화장품(주)방문판매

918100 한국화웨이(주)

918200 풀무원건강생활(주)

918300 한올화장품(주)방문판매

918400 벨트빌(주)

918500 코리아나화장품(주)방문판매부

918600 마르레퍼시픽(주)방문판매

918700 나드리화장품(주)방문판매

919100 청호나이스

919200 한국마(주) 초코렛사업

919300 한국 애보트(주)의료기기판매

919400 리브로(주)

919500 모나미(주)

919700 수입자동차협회

919800 FMK(주)

919900 불보트럭코리아(주) 부품

920000 모나미(주) OAS사업부

920100 제이메스컨설팅(주)1차금속

920200 한국생협연대(사)중앙물류센터

920300 전자상거래업

990100 전자랜드21(주) 물류센터(본사)

990200 삼성 테스코 홀플러스(본사)

990300 LG하이로직스(본사)

990400 롯데마트 물류센터(본사)

조회된 자료수 : 4029

파일저장

취소

저장

추가 화면입니다

관리자

2009년 03월 13일

조사년도 2009

조사월 02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사무소

담당자

사업체명

주소

판매액 응답자 부서 설명 전화

재고액 응답자 부서 설명 전화

유고코드 00 변동없음

유고년도 0000

유고월 00

URL

E-mail

업종분류

바로가기

해당부내기

③ 사업체 현황 입력 (사업체번호는 본청서 부여)

2.사업체명부 - 2.1.사업체관리

사업체검색

2009년 02월분

번호	사업체명
917900	마가월드(주)
918000	한국화장품(주)방문판매
918100	한국암웨이(주)
918200	종무원건강생활(주)
918300	한불화장품(주)방문판매
918400	엘트렐(주)
918500	코리아나화장품(주)방문사업부
918600	아모레퍼시픽(주)방문판매
918700	나드리화장품(주)방문판매
919100	청호나이스
919200	한국마주(유)효코렛사업
919300	한국 매보트(주)의료기기판매
919400	리브로(주)
919500	모나미(주)
919700	수입자동차협회
919800	FMK(주)
919900	볼보트럭코리아(주) 부품
920000	모나미(주) OA사업부
920100	제이에스전선(주)1차금속
920200	한국생협연대(사)중앙물류센터
920300	전자상거래업
990100	전자랜드21(주)물류센터(본사)
990200	삼성 태스코 홀콜러스(본사)
990300	LG하이로직스(본사)
990400	롯데마트 물류센터(본사)

조사년도 2009  
조사월 02

사업체번호 999900

산업분류 45110 자동차 신상품 판매업

사무소 00 통계청

담당자 1 본청

사업체명 한국자동차

주소 11 서울 서울 특별시 종로구

판매액 담당자 부서 영업부 설명 담당자 전화 02-1234-5678

재고액 담당자 부서 영업부 설명 담당자 전화 02-1234-5678

유고코드 03 신규

유고년도 2009

유고월 02

URL

E-mail

업종분류

조회된 자료수 : 4029

파일저장

취소 저장

추가 화면입니다

관리자 2009년 03월 13일

④ 신규사업체 추가 완료

2.사업체명부 - 2.1.사업체관리

사업체검색

2009년 02월분

번호	사업체명
919800	FMK(주)
919900	볼보트럭코리아(주) 부품
920000	모나미(주) OA사업부
920100	제이에스전선(주)1차금속
920200	한국생협연대(사)중앙물류센터
920300	전자상거래업
990100	전자랜드21(주)물류센터(본사)
990200	삼성 태스코 홀콜러스(본사)
990300	LG하이로직스(본사)
990400	롯데마트 물류센터(본사)
990500	롯데쇼핑 물류센터
990600	(주)신세계이마트 대구물류센터
990700	이마트 여주 물류센터
990800	하이로직텍(하이마트 물류센터 본사)
990900	씨제이 홀쇼핑 물류센터
991000	삼성전자로직텍(본사)
991100	그랜드백화점 물류센터
991200	이마트 광주(경기도)물류센터
991300	이마트 시화 물류센터
991400	뉴코아 일족 물류센터
991500	코스트로코리아
991600	미천알마홀렛
991700	GS리테일 물류센터
991800	GS리테일 중부물류센터
999900	한국자동차

조사년도 2009  
조사월 02

사업체번호 999900

산업분류 45110 자동차 신상품 판매업

사무소 00 통계청

담당자 1 본청

사업체명 한국자동차

주소 11 서울 서울 특별시 종로구

판매액 담당자 부서 영업부 설명 담당자 전화 02-1234-5678

재고액 담당자 부서 영업부 설명 담당자 전화 02-1234-5678

유고코드 03 신규

유고년도 2009

유고월 02

URL

E-mail

업종분류 GA10

조회된 자료수 : 4030

파일저장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종료

추가 화면입니다

관리자 2009년 03월 13일

3편  
도소매업관련 부록

## 나. 전입 및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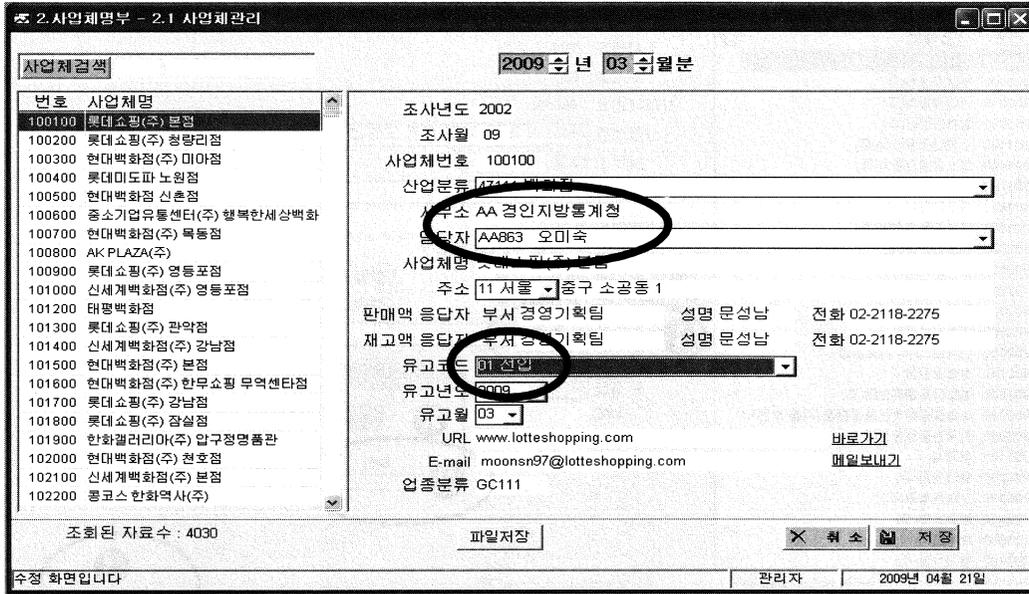
① 전출지의 담당자는 [2.1 사업체 관리]에서 [수정]버튼 클릭, 유고코드 [전출] 선택, 전입할 지방청(사무소) 및 담당자 선택 후 저장

- 지방청(사무소)과 담당자를 같이 변경하여야만 전입 및 전출이 처리(담당자를 모르는 경우 전입지의 사무소 총괄자 입력 가능)

② 전입지의 담당자는 [2.1 사업체 관리] 화면의 해당사업체에서 [수정]버튼을 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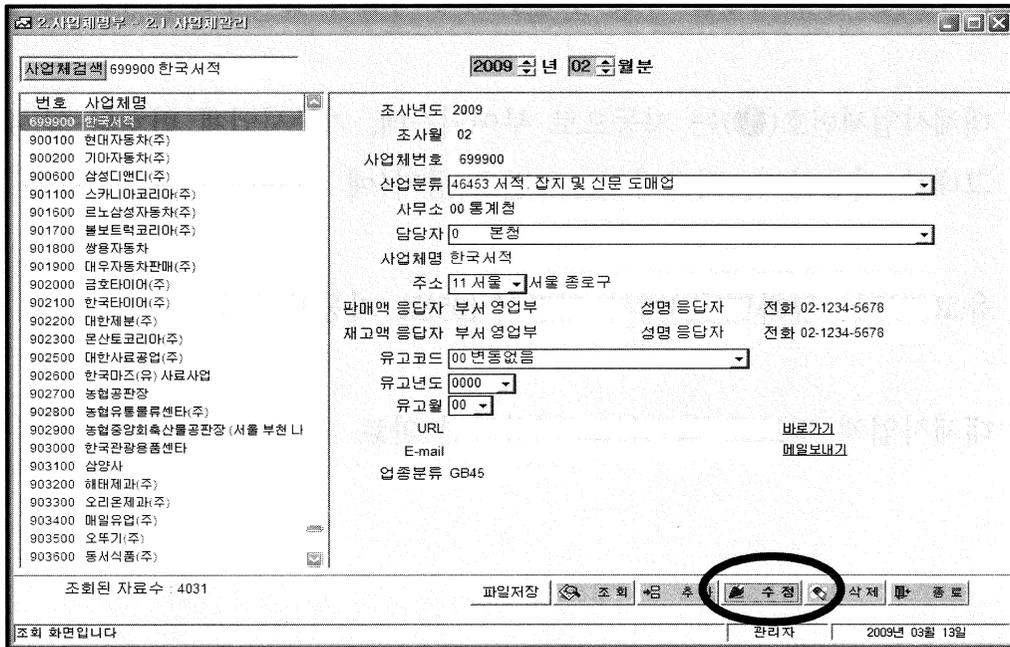
③ 유고코드를 전입으로 선택한 후 해당 지방청(사무소), 담당자, 주소, 기타 변동된 사항을 수정한 후 저장

- 전입·전출 결과는 [2.7 사업체변동보고서]에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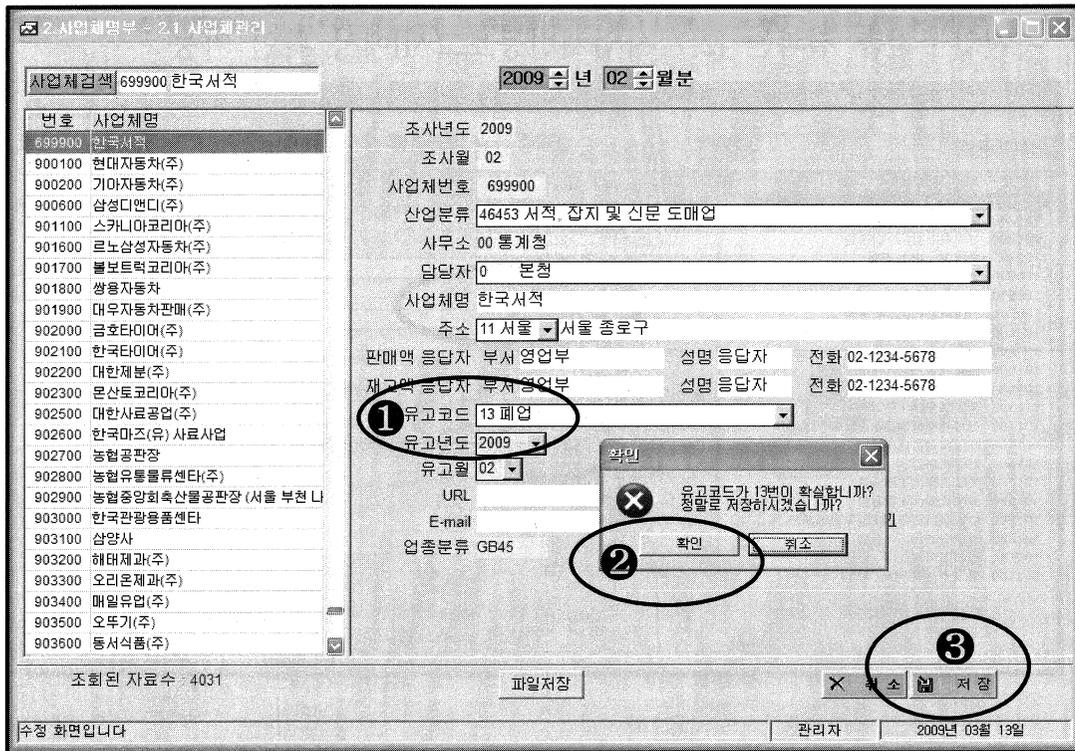


다. 사업체대체

① 유고된 사업체를 찾아 [2.1 사업체 관리]에서 [수정] 버튼을 누름



② 유고코드 [13 폐업, 14 기타, 15 응답불응중 하나를 선택하고, 확인상자에서 확인 후 저장



③ 위 화면(②)에서 저장을 하면 아래의 대체 사업체 입력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남

- 대체사업체번호(①)는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기존사업체 번호의 앞 4자리를 그대로 사용하며, 뒤 2자리는 1번호 증가(예 : 699900 → 699901)
- 유고코드는 앞화면(②)에서 저장시 [05]로 자동부여됨
- 대체사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완료

2.사업체명부 - 2.1 사업체관리

사업체검색 699900 한국서적      2009년 02월분

번호	사업체명
100100	롯데쇼핑(주) 본점
100200	롯데쇼핑(주) 청량리점
100300	현대백화점(주) 미아점
100400	롯데미도파 노원점
100500	현대백화점 신촌점
100600	중소기업유통센터(주) 행복한세상백화
100700	현대백화점(주) 목동점
100800	AK PLAZA(주)
100900	롯데쇼핑(주) 영등포점
101000	신세계백화점(주) 영등포점
101200	태평백화점
101300	롯데쇼핑(주) 관악점
101400	신세계백화점(주) 강남점
101500	현대백화점(주) 본점
101600	현대백화점(주) 한무쇼핑 무역센터점
101700	롯데쇼핑(주) 강남점
101800	롯데쇼핑(주) 잠실점
101900	한화갤러리아(주) 압구정명품관
102000	현대백화점(주) 천호점
102100	신세계백화점(주) 본점
102200	콩코스 한화역사(주)
102300	아이파크백화점
102400	롯데쇼핑(주) 미아점
102500	현대백화점(주)부산점
102600	롯데쇼핑(주) 부산본점

조사년도 2009  
조사월 02  
① 사업체번호 699901

산업분류  
사무소  
담당자  
사업체명 ②  
주소

관리	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
판매팀	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
재고팀	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

유고코드 05 사업체대체 ③  
유고년도 2009  
유고월 02

URL      바로가기  
E-mail      메일보내기  
업종분류 GB45

조회된 자료수 : 4030      파일저장      X 취소      저장

추가 화면입니다      관리자      2009년 03월 13일

※ 대체시 위의 절차를 지켜야 하며, 기존의 사업체 정보위에 새로운 사업체 정보를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

④ [2.6 대체사업체 확정]에서 대체사업체의 종사자수, 매장면적, 연간 및 월간판매액을 입력(㉔)하면 본청에서 검토 후 확정

- 변동부호 05(㉑) 는 대체사업체를 나타내며, 대체사업체는 [2.1 사업체 관리]에서 조회 가능
- 유고사업체는 [2.2 유고사업체 조회] 조회가능

도소매업부문-경상조사 2005 - [2. 사업체명부 - 2.6 대체사업체 확정]

1 기초자료 2 사업체명부 3 자료입력 4 수준점검 5 디플러미터 6 지수시산 7 결과표 8 KOSIS 9 작업관리 함(%)

사업체검색 2009년 02월분

일련 번호	확정여부	사무소	사업체 번호	구분	담당자 ID	사업체명	주소	전화 번호	변동 부호	변동 년	변동 월	산업 분류	업종 분류	종사 자수	매장 면적	연간 판매액	월평균 판매액	기타사항
9	확정	비확정	BD	631301	변동전	BD019	울림픽낙시구미시-463-4	-463-4	13	2009	02	47640	GC62	1	17	29	2	폐업
	확정	비확정	BD	631301	변동후	BD019	울림픽낙시구미시-463-4	-463-4	13	2009	02	47640	GC62	1	17	29	2	폐업
	확정	비확정	BD	631302	변동후	BD019	사곡낙시 구미시-461-7	-461-7	05	2009	02	47640	GC62	1	59	36	3	
10	확정	비확정	AA	575501	변동후	AA862	남버원텔레구로구 2619-6	2619-6	13	2009	02	47312	GC32	1	17	120	10	
	확정	비확정	AA	575502	변동후	AA862	2002말레콤송파구 3432-2	3432-2	05	2009	02	47312	GC32	2	26	180	15	폐업대체
11	확정	비확정	AA	650201	변동후	AA823	파스퇴르우동대문 2242-6	2242-6	15	2009	02	47992	GC92	1		70	6	
	확정	비확정	AA	650202	변동후	AA823	삼양우유대관약구 858-11	858-11	05	2009	02	47992	GC92	1		120	10	응답불응대체
24	확정	비확정	00	699900	변동후	0	한국서적 서물종	1234-5	13	2009	02	46453	GA45	50	3500	1200	100	폐업으로 인한대체
	확정	비확정	00	699901	변동후	0	대한민국서서물	김9876-5	05	2009	02	46453	GA45	55	4000	1080	100	대체사업체

⑤ 대체 확정후 [2.7 사업체변동보고서]에서 확인 가능

도소매업부문-경상조사 2005 - [2. 사업체명부 - 2.7 사업체변동보고서]

1 기초자료 2 사업체명부 3 자료입력 4 수준점검 5 디플러미터 6 지수시산 7 결과표 8 KOSIS 9 작업관리 함(%)

사업체검색 699900 한국서적 2009년 02월분

일련 번호	사무소	사업체 번호	구분	담당자 ID	사업체명	주소	전화 번호	변동 부호	변동 년	변동 월	산업 분류	업종 분류	11	12	13
18	AA	575501	변동후	AA862	남버원텔레콤	구로구 오류2동 137-9	02-2619-6110	13	2009	02	47312	GC32			
	AA	575502	변동후	AA862	2002말레콤	송파구 석촌동 272-9	02-3432-2000	05	2009	02	47312	GC32			
19	AA	650201	변동후	AA823	파스퇴르우유 전농동점	동대문구 전농1동 130-143	02-2242-6826	15	2009	02	47992	GC92			
	AA	650202	변동후	AA823	삼양우유대리점	관악구 신림12동 748-38	02-858-1112	05	2009	02	47992	GC92			
20	AA	629101	변동후	AA823	게임프라자	광진구 구의3동 546-4	02-3424-8068	13	2009	02	47311	GC32			
	AA	629102	변동후	AA823	활린저렴퓨터	광진구 구의3동 테크노마트7층B-1	02-3424-7544	05	2009	02	47311	GC32			

⑥ [3.1 조사표 입력]에서 입력

라. 도소매업 조사표 입력

① 서비스업동향시스템을 열어 도소매업부문 선택

② [3.1 조사표 입력]을 열어 입력

- 도소매업은 금월과 전월만 수정가능하고, 전월이전 자료는 연간보정시에 수정
- 금월자료가 잠정치인 경우 : 금월 자료를 입력한 후, [잠정]을 체크하고 [저장]
  - 금월에 확정자료를 입력후 [확정] 체크 가능
  - [확정]으로 체크시 익월에는 수정 불가능 (단, 금월 입력기간 동안에는 자료 수정 가능)
- 전월 자료가 잠정치인 경우 : 전월 매출액 자료를 수정한 후, [확정]을 체크하고 [저장]

2009 년 02 월분 도소매업부문 조사표

사업체번호: 699901    사업체명: 대한민국서적    산업분류: 46453    담당자ID: 본청

1. 월간 영업일수: 0 일    2. 종사자수: 0 명    3. 매장면적: 0 m<sup>2</sup>    4. 영업형태: [선택]

5. 월간 상품판매액 (단위: 백만원)

[전월]    [금월]  잠정     확정    총합계: 0 백만원

코드	상품명	국내시판액	수출액	합계
01	도매	0	0	0

코드	상품명	재분류1	재분류2	판매액	전월비
내구재	11	가전제품		0	
	12	통신기기		0	
	13	컴퓨터		0	
	14	가구		0	
	15	키금속류		0	
	16	승용차		0	
	17	상용차		0	
	19	내구재기타		0	
준내구재	21	의복		0	

6. 월말 상품재고액 (백만원)

총합: 0    내구재: 0    준내구재: 0    비내구재: 0

수수료 매장 재고액:  포함     불포함    재고액 평가방법:  구입원가     판매가    직영매장판매액 비율(%): 0

7. 비고 (종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 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전월판매액: 0    전월비: 0%    전년동월판매액: 0    전년동월비: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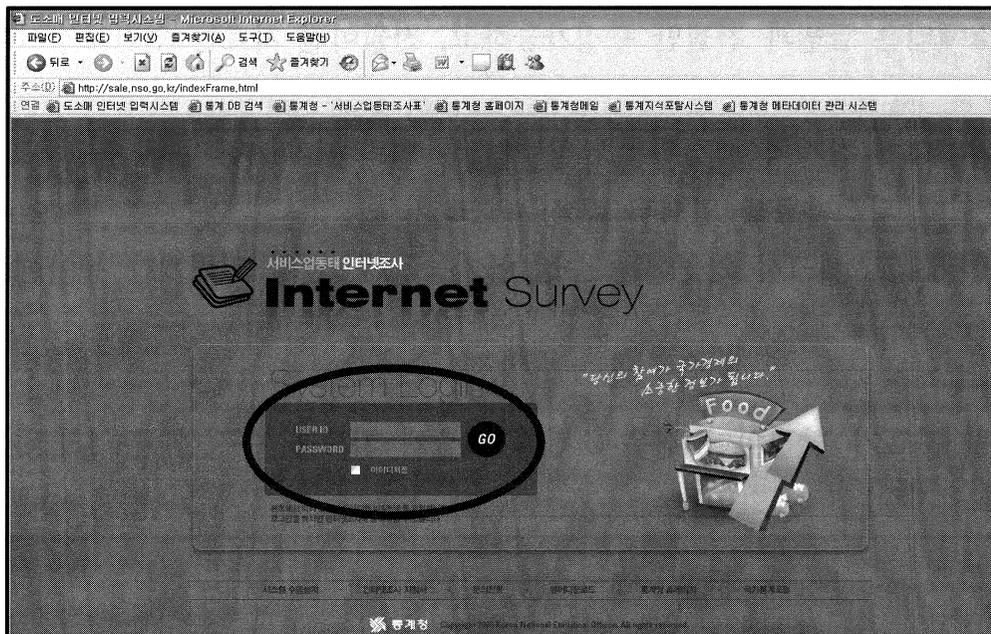
사업체정보     판매액 시계열     저장     취소

### 마. CASI 입력

① CASI 전용사이트 접속 : <http://sale.nso.go.kr>

※ 테스트화면 ⇒ ID : 테스트, PASSWORD : 1

② 부여된 [USER ID] 와 [PASSWORD] 입력한 후 [GO] 클릭



③ 조사표 입력한 후 저장





승인(협의)번호  
제 10150 호

# 서비스업동향조사표(4)

- 도매 및 소매업 (G) -

20 년 월분 (확정, 잠정)

· 이 조사는 도소매부문의 경기 동향 분석을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조사 (국가지정통계 10150호)입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체명	
------	--

※행정구역 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담당자 ID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① 월간 영업일수  일      ② 월말 종사자수  명

③ 매장면적(실제 사용면적, 소매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만 기입)  m<sup>2</sup>

④ 월간 상품판매액(부가가치세액 제외)

④-1. 도매업 (단위: 백만원)

총 판매액	수출액	국내 판매액

④-2. 소매업(직영, 특정매입 및 임대를 매장분을 포함한 상품판매액 기입) (단위: 백만원)

내구재	판매액	준내구재	판매액	비내구재	판매액
11. 가전제품		21. 의복		31. 음식료품	
12. 통신기기		22. 신발		32. 의약품	
13. 컴퓨터		23. 가방		33. 화장품	
14. 가구		24. 운동, 오락		34. 서적, 문구	
15. 승용차		29. 기타		39. 기타	
16. 상용차					
19. 기타					
				99. 합계	
『임대를 매장』이 있는 경우 『임대를 판매액』을 제외한 상품 판매액 합계					

⑤ 월말 상품재고액(구입원가 기준으로 기입) (단위: 백만원)

상품재고액   판매가 (재고액 평가 방법이 판매가 기준이면 √ 표시)

※ 소매업체는 직영 및 특정매입 매장분을 기입

⑥ 비교(상품판매액 증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 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응답자	조사 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	
			F A X	
			E-mail	

# ◆ 조사표 기입요령 ◆

## I. 조사표 기입 시 유의사항

- 이 조사는 도소매업의 판매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소비 및 경기동향 분석과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구역 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담당자 ID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판매액, 재고액 등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합니다.  
(예: 58,760,000원인 경우 → 59백만원으로 기입)

## II.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1. 월간 영업일수 :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더라도 1일로 봄
2. 월말 종사자수 : 조사대상월에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
  - 상시종사자, 일당, 시간급 및 수당 등으로 고용한 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 종사자 등)를 포함
3. 매장면적 : 소매업의 사업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면적은 포함하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면적은 제외
4. 월간 상품판매액(부가가치세액 제외)
  - 다른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소매업(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이 아닌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타산업 매출액은 제외 (단, 타산업의 비중이 매우 작고 판매액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포함하여 조사)
  -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액은 판매액에서 제외
  - 도매 : 한달 간의 상품판매액은 수출액과 국내판매액으로 구분하여 기입
  - 소매 : 한달 간의 상품판매액은 상품별로 구분하여 기입
    - 직영매장, 특정매입매장, 임대율(수수료매장)의 상품판매액 조사

### 상품분류기준

내 구 재 :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고가의 상품  
준내구재 :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비교적 저가이거나, 주로 개인용품으로 사용하는 상품  
비내구재 : 1년 미만 사용으로 제품이 소진되거나 비교적 저가인 상품

5. 월말 상품재고액
  - 모든 사업체가 기입하되, 소매업체는 직영 및 특정매입 매장분을 기입
  - 상품재고액은 구입원가 기준으로 기입
6. 비고(상품판매액 증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이사항 등)
  - 상품판매액이 전월, 전년동월에 비해  $\pm 20\%$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입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